

입법평가 연구 09-16-□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윤석진 · 김주환 · 김명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System

연구자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oon, Seok-Jin

김주환(강남대학교 교수)

Kim, Joo-Hwan

김명환(강남대학교 교수)

Kim, Myeong-Hwan

2009. 10. 30.

국문 요약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이하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법제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국회 및 정부에서 제출한 대안입법에 대한 결과평가의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도입될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사전입법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제분석을 하였는바,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수준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그 내용분석 결과 현행 법제영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국회와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입법대안들은 현재까지 총 4개가 있으며, 대안별로 적용대상, 연금액, 연금의 수급요건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입법평가에 사회영향평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대안입법들에 대한 이용가치분석, 경제성분석, 사회영향분석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키워드 :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사전입법평가, 사회영향평가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it is reported that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disabled in Korea are half under the urban workers' household income. It means that the protection of the low-income disabled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on social security and association laws of Korea. Hence, the present government is preparing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Act as part of social security of the low-income disab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and survey the optimum rules outlook with the comparison of the result evaluation on the alternative legislation now submitted to the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is evaluation paper deals with the ex-anti evaluation of legislation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System and Disability Person Pension Act which will be introduced hereafter as main contents. For this, first with case analysis, it showed that despite of very high right standard of the disabled, the income security standard of the disabled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nd, with surveying norm system for the disabled income security and its contents, it showe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mostly guarantees the income security of the disabled who can be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but totally lacks of the severely disabled who cannot.

Next,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he legislation evaluation of various disability person pension acts submitted by the Assembly and the government was conducted. Because these legislation alternatives, total 4 so far, have differences more or less in the terms of application object, pension amount, requisite of subsidizing, and so on, the impact assessment on them was conducted. In this process, the application

perspective of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to the ex-anti evaluation of legislation was surveyed. Consequently, in this evaluation paper, the analysis of the usefulness,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effect on society of these alternative legislations was conducted, and the optimum rules outlook, based on them, is presented.

※ Key Words : disability person, income security, disability person pension, ex-anti evaluation of legislation, social impact assessment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의 대상	(가칭)장애인연금제도 및 관련 법안	
	◦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항숙의원 발의안)	
	◦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정부발의안)	
입법평가자	◦ 평가책임자 : 윤 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평가자 :	김 주환(강남대학교 교수),
		김 명환(강남대학교 교수)
입법평가 필요성	<p>◦ 현재 매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 이하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체 장애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비장애인가구 수급자 비율의 2배 정도 높고 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전체 실업율의 3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증빙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은 이러한 저소득에다가 추가비용의 부담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며, 대다수 장애인들이 빈곤층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정되어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은 일반 장애인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은 우리 사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보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방안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논하여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 현재까지 시행중인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정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장애인의</p>	

입법평가서			
	<p>경제적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전부이며, 그나마 실제 급여수준을 놓고 본다면, 이들 제도 또한 실질적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부족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으로써 “연금제도”의 도입논의가 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맞춤형 복지라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실성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중증장애인지초연금법을 발의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이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발의하였었다. 그리고 2009년에 들어서는 4월에는 박은수의원이 장애인연금법을, 9월에는 윤석용의원이 중증장애인연금법을, 그리고 10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정부입법안의 형태로 중증장애인지초연금이 제안되어 심의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안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안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 구상	문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2,105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19.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27). 또한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의 인구비율 또한 1995년 0.8%에서 2000년 2.0%, 2007년에는 약 4.7%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의 규모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체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장애인구의 증가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의 구조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고차원적 욕구로 변화하고 있

입법평가서

으며, 양적 욕구를 넘어서 질적 욕구까지 논의해야할 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구조 변화는 능동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단체총연맹이 5개영역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된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57.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연구 결과가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연구결과가 44.15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 30.1%, 소득보장 21.9%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보장,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차원의 안정망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소득보장의 미비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형편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28.11%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1/4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평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최저생계비 미만 장애인의 비율 또한 중증 장애인 35.9%, 경증장애인 24.5%로 추정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3,300원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보호간병인 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 의료목적의 비용지출이 다수를 이루었다. 즉,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간장애 87만 6천원, 안면장애 30만 6천원 등이었으며, 가장 적은 추가 소요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6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만 7천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가 3만 7천원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소비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중심으로 추가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다. 특히, 간장애의 경우 의료비가 80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이었다.

입법평가서			
		<p>목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크게 성장하였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체계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수준의 문제 현행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일면을 살펴보건대, 현행 장애수당이나 장애이동수당의 경우 지원액수가 필요에 비해서 낮다는 문제와 함께 수당의 지급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범위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반계층으로 단순구분하고 있고, 지원단가도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산출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입법평가서			
			<p>다음으로 현행 장애수당의 지급과 연동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생계급여수급요건으로서 자립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계층과 자립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근로무능력계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재하여 자립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과 그 가구는 생계급여의 수급자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절대빈곤층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그 가구에 대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의 미약 또는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p> <p>이를 종합해서 보건데,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능력의 상실 및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거나,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및 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및 간접적 소득지원 제도 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 대상이 협소하고 지급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각 제도는 장애인 및 그 가구의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유효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p>

입법평가서			
			<p>◦ 최저생계비의 하향</p> <p>최저생계비가 2008년 4인가구의 경우에 1,265,8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1988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이후 최하를 기록했다. 일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 또한 1999년 91%에서 매년 차츰 더 낮아져서 2008년에는 54%로서 역사상 최하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의 수준이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권리로서 자리매기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필수적이다.</p> <p>예산에 끼워 맞추기식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에 근거해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의” 최저생계비에 전면적으로 유리될 수밖에 없다.</p> <p>◦ 보장수준의 하향</p> <p>4인가구의 경우에는 2002년에 최저생계비의 11.96%가 삭감된 채 생계급여가 지불되었으나 2008년에는 삭감율이 18.87%로 높아졌고,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02년에 11.96% 삭감된 채 지불되었던 생계급여는 2008년에는 23.33%로 높아졌음. 금액기준으로 보면 4인가구의 경우에 2002년에는 118,371원을 뺀 금액을 수급권자들에게 생계급여로 지급하였으나 2008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38,848원을 빼고 지급할 것이다.</p> <p>이에 따라 2008년 4인가구의 실질적인 보장수준인 최고생계급여는 1,027,000원으로서 올</p>

입법평가서			
			<p>해의 989,467원보다 불과 37,533원이 더 많은데, 이는 2008년의 실질적인 생계급여 인상율이 3.65%에 불과함을 의미. 3.65%의 생계급여 인상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서 사실상 내년의 보장수준이 더 낮아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p> <p>한편 장애수당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1~2급과 일부 3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장애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것 같이 보임.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LPG보조를 삭감한 예산을 수당으로 전용한 데 불과하다.</p> <p>차상위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523천원으로서 이 사람이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 12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장애수당을 합하여 최고 575천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놀고먹을 때 받을 수 있는 53만3천원보다 불과 4만2천원이 더 많은 것이다. 출근에 따르는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하고 실제로 계좌로 입금되는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근로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보다 더 적다.</p> <p>차상위계층 가구에게도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없고 단지 장애수당만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12만원, 3~6급 장애인의 경우에 3만원만 지급받는다. 차</p>

입법평가서			
			<p>상위계층을 규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장애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다. 1인가구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523,105원으로서 실제 소득에 실제로는 부양받지도 않는 터무니없이 높은 간주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다 더해진 것으로서 차상위계층으로 간주되는 가구들 중에는 사실상의 ‘비수급 빈곤층’이 많다. 실제로는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급권자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계층이 많음. 선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비수급 장애빈곤층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근로능력의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시장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나 시장노동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차하위이지만 정부는 차상위로 예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문제가 수급권자 문제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은 수급자가구보다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의 적용에 따른 경직성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들의 선정기준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연계되어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연계하여 여러 가지 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부과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기준 때

입법평가서			
			<p>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이 한꺼번에 박탈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차상위 이상이면 다른 여러 가지 부과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실적 장애판정기준 개선 현행 장애등급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능력과 별개로 책정됨. 예컨대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일지라도 이동권만 보장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면 다른 업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일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식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는 3급까지밖에 없어서 사실상 정신장애 4-6급은 치매와 마찬가지로 정상인으로 취급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대안입법 입법평가	<p>이용 가치 분석</p> <p>종합적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결국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증진, 사회안전망의 역할 등이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유입을 통한 사회안정, 사회통합을 위한 거시적 사회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 조건 등에 따라 유형별 수급권자 집단이 형성될 것이며, 각각의 유형별 집단에 대한 장애인연금제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진다.</p>
		경제성 분석	<p>입법안별로 총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각 입법안별로 해당하는 비용추계의 식을 정하고 계산을 통해 연도별 총 비용을 추계하였다. 본래 총 비용을 추계할 때 정책시행을 위한 정책운영비, 예를 들어 조직운영,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가</p>

입법평가서	
	<p>계상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다.</p> <p>정부(안)을 수행하기 위한 총 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초 급여 1조 101억원과 부가급여 1조 1,000억원 등 총 2조 1,10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었다. 2010년에는 기초급여 6개월분 1,017억과 부가급여 610억원 등 총 1,6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윤석용 의원(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요가 예측되는 정부재정의 총 비용은 약 12조 191억 가량이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에는 6개월분 약 1조 827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조 3,881억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 <p>박은수 의원(안)을 시행하기 위해 예측되는 정부재정의 총 비용은 약 15조 7,297억 가량이다. 중증장애인 대상의 연금총액이 약 6조 3,197억이며, 경증장애인 대상의 연금총액이 약 9조 4,100억이다.</p>
사회 영향 분석	<p>특히 소득층족들의 개념을 통해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향상이 목표달성의 수준으로 차별화 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현황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연금, 친인척 보조금(사적이전), 사회보호단체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이전부분과 사적이전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장애연금 수급 이후의 소득현황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실태에 있어 항목별 지출실태와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비용의 추계 예산을 비교한 결과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 예산 6조 3,197억원,

입법평가서			
			<p>경증장애인 예산 9조 4,100억원 등 총 15조 7,2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석용 의원(안)이 12조 1,911억원, 정부(안)이 기초급여 1조 101억원, 부가급여 1조 1,000억원 등 총 2조 1,101억원으로 나타나 재정비용 추계금액의 큰 차이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대상의 재정 예산만 비교해 보았을 때 윤석용 의원(안)이 약 5.77배, 박은수 의원(안)이 약 3.00배의 규모의 차이를 보였다.</p> <p>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안)의 수급권자의 인정범위가 가장 좁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1촌 직계 및 배우자의 경제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 이상일 경우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0년 등록장애인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194천명이 장애연금지급대상 인구로 추정된다. 이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80천명을 기준으로 약 33.3%, 3급이상 장애인 931천명을 기준으로는 약 20.8%에 해당하는 장애인만이 기초장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어 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연금지급액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동일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기초급여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91천원이다. 그에 반해 윤석용 의원(안)은 279천원 약 3.07배에 해당하며,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 232천원으로 2.54

입법평가서			
			<p>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증장애인 116천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27배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 물론 정부(안)은 부가급여를 통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금액을 보전하고자 하고 있으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재정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장애수당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장애수당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정책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염려가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 91천원에 부가급여 60천원을 합산할 경우 151천원으로 장애수당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p>
종합결론 및 권고	단계적 제도발전방안 모색		<p>제도운영 초기 국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안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와 함께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명된 중증 장애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이후 제도 정착단계에 이르러서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자산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되, 최초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시작하여 이후 차차상위계층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금급여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 금액(9만원~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도정착단계에서는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및 국민연금 장애연</p>

입법평가서	
	<p>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p>
관련법령과의 체계성 조화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의 관계에서 보면 장애인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장애인의 최저 소득 보장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빈곤한 경우에 한하여 빈곤한 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간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p> <p>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의 관계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제도과는 그 입법목적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p>
수급장애인 판정기준 개선	<p>새로운 입법모델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보다 훨씬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차등지급의 구분은 경증과 중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한해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제도와 비교해 보면, 제도의 대상 인구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장애기준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개편 과제를 통해서 연구된 장애판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p>
급여지급방식의 유동화	<p>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소득인정액의 70/100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일한 중증장애를 가지고</p>

입법평가서	
	<p>있으면서 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 속한 사람과 이 기준을 근사하게 초과한 가구에 속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실제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고 장애기준만으로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p>
근로유인성과의 연계	<p>장애인보호의 종국적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호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안입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의 근로생활 관계와 연계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p>
평가방법론적 한계	<p>첫째, 최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병행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이지만, 비용과 편익을 설정함에 있어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제도와 같이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편익의 발생을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이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p> <p>둘째, 입법평가의 사회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본</p>

입법평가서		
		<p>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적 차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 대한 실제 분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담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사회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변수 선정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사회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p>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31
제 1 절 평가의 목적	31
제 2 절 평가범위	34
I. 소득보장의 개념	34
II.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37
III.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39
제 3 절 평가방법	44
I. 사전입법평가	44
II.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가 활용	45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51
제 1 절 문제분석	51
I.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51
II. 국내 장애인 현황 및 분석	66
III.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평가	84
제 2 절 목표분석	88
I. 정치적 목표분석	88
II. 목표의 설정	90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91
I. 국민연금법	91
II.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07
III. 군인연금법	123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7
V. 장애인복지법	159
VI. 체계분석결과	167
제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186
I. 주요국의 장애인연금제도의 운용	186
II. 입법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24
제 5 절 대안입법 및 시나리오	228
I. 대안입법 1(장향숙의원 발의안)	228
II. 대안입법 2(박은수의원 발의안)	230
III. 대안입법 3(정화원의원 발의안)	232
IV. 대안입법 4(윤석용의원 발의안)	234
V. 대안입법 5(정부발의안)	236
VI.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238
제 3 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241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241
I. 연금제도 수급권자 분석	241
II. 연금지급액 분석	243
III. 소 결	244

제 2 절 경제성 분석	245
I. 장애인연금제도의 비용추계	245
II. 비용추계를 위한 조건 검토	246
III. 비용추계의 실제	250
제 3 절 사회적 영향분석	263
I. 빈곤감소효과	263
II. 삶의 질 향상효과	265
III. 사회안정 및 통합효과	266
IV. 소 결	267
제 4 장 종합 결론 및 권고	269
제 1 절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고려	269
I. 단계적 제도발전방안 모색	269
II.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 조화	270
III. 수급장애인의 판정기준 개선	271
IV. 급여 지급방식의 유동화	273
제 2 절 영향평가기법의 활용에 따른 시사점	273
제 3 절 평가의 한계	274
I. 대안입법상의 한계	274
II. 평가방법론상의 한계	277
참 고 문 헌	279

【부 록】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발의안)	287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299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311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317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정부발의안)	329

제 1 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 1 절 평가의 목적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확산, 장애인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학 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점차 전환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 형태와 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¹⁾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와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매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 이하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체 장애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비장애인가구 수급자 비율의 2배 정도 높고 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전체 실업율의 3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1) 변용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국내 장애인정책포럼 자료집, 2008, 9면.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증빙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은 이러한 저소득에다가 추가비용의 부담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며, 대다수 장애인들이 빈곤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정되어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은 일반 장애인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은 우리 사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보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방안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논하여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연금제도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는 장애연금 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 중에서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득보장제도가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서 장애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가 1980년대 이후에 많이 제도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의 증액
- 본인부담 의료비지원 - 공공부조대상자
-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급대상확대와 지급액 증액
- 자녀교육비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 전화요금할인 -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지체 장애인 (1~3급)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모든 장애인
- 세제혜택 - 수입물품 관세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소득세 장애인 공제(등록장애인)

- 각종 요금 면제 및 할인 - 항공기, 철도, 지하철, 공원, 고궁, 박물관이용료(등록장애인)

이들 중 현재까지 시행중인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정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전부이며, 그나마 실제 급여수준을 놓고 본다면, 이들 제도 또한 실질적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부족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으로써 “연금제도”의 도입논의가 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맞춤형 복지라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으로서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2년부터 장애인계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특히,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2년 6월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현실적인 장애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실현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당시 30여개 단체 참여)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후 이 공동대위가 그해 10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2002년 대통령선거기간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선거공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이후 2007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등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으며, 현 정부와 18대 국회에게 이 공이 넘겨졌다. 그리하여 이제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주요 이

슈가 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장애인복지 입법정책의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미룰 명분은 더욱 약화되어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도입하느냐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중증장애인가초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이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하였었다. 그리고 2009년에 들어서는 4월에는 박은수의원이 장애인연금법안을, 9월에는 윤석용의원이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그리고 10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정부입법안의 형태로 중증장애인가초연금법이 제안되어 심의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안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안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평가범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보장의 개념과 삶의 질, 사회통합 차원의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I. 소득보장의 개념

200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66.5%인 4,857억원이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에, 전체 예산의 3.5%인 252억원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

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한 소득지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1991년 제도 도입 이후 2004년까지 기초 보장 수급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의 30%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 지급되어져 온 장애수당은 2005년에 들어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기초보장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급액이 추가비용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7.8%에 불과했던 장애수당 수급율은 2007년에는 18.8%까지 상승하였다. 장애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이 비장애인 가구의 4배에 달할 만큼 열악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은 장애수당보다 안전한 사회안전망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소득상실의 위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근로능력 일시적 상실로 구분된다.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소득보장의 기본원칙은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포괄성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의 포괄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공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충

분성은 개별 대상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형평성은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필요성에 비례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소득보장 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부담할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대상의 특수한 소득보장체계이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 사회수당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대응기제라 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중인 자 외에 자영업자, 선천적 장애인 및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자를 포함한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 그리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방식의 1차적 안전망과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을 적용하는 2차적 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되는 장애인 연금제도(무기여)의 도입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소득보장체계를 거시적이고 제도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과 함께 대안의 탐색을 시도하였다.³⁾

장애인의 소득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적 자본에 관한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구직기술과 취업경

2) DeJong, P. (2003). Disability and Disability Insurance.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Martin, B. (2003). Transforming Disability Welfare Policy. Completing a Paradigm Shift.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3) 조홍식·유동철,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과제, 아태장애인10년 평가 논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이선우 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유동철 외, 『장애인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험, 근로습관 등이 부족하여 취업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의 근로의사와 능력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 작업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의 노동력 수요측면에 있어서 고용주는 많은 지원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꺼리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대해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장애인의 고용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⁴⁾ 첫째, 삶의 객관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나 사회 내에서 삶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과 환경 즉, 경제적 상태, 소득수준, 건강수준 등의 조건이나 통계치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둘째, 삶에 대한 주관적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조건이나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

4) 백은령, 중증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제 1권, 2004, 115-145면. 이 논문에서 백은령(2004)은 중증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지표나 통계치도 중요하지만 삶을 느끼고 경험하는 주체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느낌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양자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주관적인 느낌의 필요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장애종류별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⁵⁾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척수손상, 뇌손상, 교통사고 장애인 등 지체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장애인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거나,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미시적 관점의 환경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정도에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수입, 종교, 결혼상태, 인종,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정서상태, 사회활동, 사교활동,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시각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⁶⁾, 이를 대략 3가지로 종합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수입, 결혼상태, 종교, 장애기간, 일상생활능력,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환경요인은 장애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공식적 사회환경, 공식적 사회환경,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은 장애인이 일반인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하는 정도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5) Kreuter et al., 1998; Furrer et al., 1992

6) 백은령, 전개논문, 123aus.

Ⅲ.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장애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기능은 사회통합이다.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목적이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극복하고, 분열된 여러 계급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통합을 기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통합효과를 설명하면서 Durkheim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이론의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⁷⁾ 기계적 연대는 사회적 분업이 덜 진행되고, 사회적 규범은 억압적이며, 사회통합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전통사회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간의 차이가 최소화되고,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를 강하게 지향할 때 기계적 연대는 커진다.

반면에, 유기적 연대는 발전되고 산업화된 사회의 특징으로서 사회적 분업 또는 기능적 분화의 산물이다.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는 계약관계가 지배적이 되고, 개인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며,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응집도가 낮다. 이 단계에서는 자살과 같은 사회적 일탈이 증대하고, 개개인의 욕망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 고도로 발전된 유기적 사회에서도 여전히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집단양심이 필요하며, 만약 기계적 연대의 수준이 낮으면 유기적 사회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상호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 사회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제도의 존립 자체는 물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공통의 가치에 의한 사회통합(기계적 연대)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사회복지

7) 김종인·원석조,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보건과 복지』 제3집, 2000, 162-187면.

지정책은 개인, 집단, 계층, 계급 등을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와 Wilding(1984)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야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⁸⁾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에 나서면서 사회문제 당사자의 고통과 불만을 직접 해소하고,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과 도전을 희석시키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타주의와 자비심과 같은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을 규정할 때 개인주의적 정의를 채택하여 사회에 대한 도전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분열의 요인을 봉인하면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게 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가치와 행동을 보상하거나 처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나 행동에 대해서는 낙인을 가해 저해요인을 감소시키는 한편, 성실, 자조, 검약 등의 가치나 행동을 중시하고 장려하면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제공한다.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여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데, 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8) George, V. and P. Wilding, *The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KP), 198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하는데 기여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를 사회복지수급자와 비 수급자, 부의 생산자와 소비자, 납세자와 수혜자, 실업자와 취업자, 건강한 자와 병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를 관련 집단들간의 갈등을 제도를 통해 수렴한다. 즉, 정책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위협의 정도나 파괴력이 가장 큰 계급간의 갈등을 희석시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집단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과 그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통합과 분배라는 중요한 복지정책적 목표를 간과한 결과로 양극화의 심화, 불평등의 증대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회의 현상과 수준을 판단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지표들이 대부분 양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어 사회의 포괄적인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사회 시스템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⁹⁾

포괄적이면서 장기적인 지향성을 중시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에 입각한 질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물질적 수준의 연대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양적인 수준과 질적인 수준을 모두 나타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질’개념은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한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의 질’ 개념은 1990년대 유럽 사회정책 논쟁의 결과물로 실업 및 불평등 증가, 사회지출 감소 등의 정책 실패 및 사회정책이 경제

9) 이태진·박은영,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2009. 04, 48-56면.

정책에 장기간 종속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다.¹⁰⁾ 사회복지와 개인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조건 아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확대로 정의되는 ‘사회의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 긴장의 함수로, 개인의 생애사적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행위자의 구조를 한 축으로 하고,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체계와 생활체계를 한 축으로 하는 2가지 축의 교차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¹¹⁾

2003년 EU 집행위원회가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기초를 제시하면서 사회통합이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각 국은 사회적 배제의 방지, 근로와 교육기회의 강화, 통합장애요인 제거, 주거개선 및 노숙이 규모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보편적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등을 포함한 8개 우선정책목표를 채택하고 각각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¹²⁾

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복지환경의 실태와 연계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지표를 1차적으로 빈곤해소 차원의 소득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삶의 질 차원으로 접근하여 개인적, 환경적, 사회통합적 차원의 의미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의 질 개념과 연계하여 추가비용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교육, 의료, 주거, 노동의 4가지 분야에서 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이태진·박은영, 전계논문, 49면

11) 대표적인 예로 Beck, Wolfgang, Van Der Maesen, Laurent J. G., Thomése, Fleur, and Walker, Alan.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참조.

12) 김문길,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57면.

본 평가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시스템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삶의 질, 그리고 중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기여도 이다. 이에 따라 본 평가보고서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고찰하는 5가지의 법안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시 가장 핵심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요건, 연금제도의 운영방안(사회보험방식 또는 조세지원방식), 연금급여액의 교차분석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의 평가대상과 범위는 현재 입안되어 있는 법률(안)에 포함된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요건, 연금제도의 운영방안, 연금급여액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해결 과제로 현행법상 장애인의 소득보장 또는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입법화·제도화되어 있는 각종 급여에 대한 분석도 선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8년에 발간된 장애인통계와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 유형, 소득 및 경제실태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교차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빈곤도, 경제활동을 등을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의 각종 장애인소득보장 실태분석 및 평가를 하고 외국의 사례와 입법(안)에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사회학적 평가와 규범론적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회영향평가기법을 이용한 각종의 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입법(안)들에 대한 문제점, 대안 및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평가방법

I. 사전입법평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없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여부 및 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현재 국민연금법 및 특수직역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제 및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입법으로서 (가칭)“장애인연금법”을 고찰·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입법평가의 유형인 사전·병행·사후입법평가 중 사전입법평가기법을 채택하여 평가할 것이다.

사전입법평가는 대안입법의 전개 및 그 결과평가의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 기초는 규율의도이고, 고찰방식은 장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입법평가는 미해결의 규율영역에 대한 사전입법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대안입법을 제공한다. 또한 사전입법평가를 사용하여 대안입법의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한다. 사전입법평가는 실제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단계별 대안입법의 개발을 체계화하며, 개발된 대안입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입법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사전입법평가는 대안입법의 예상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하여, 예상되는 부담 및 부담의 경감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안입법의 최상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의 전체적 윤곽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한다.¹³⁾

사전입법평가는 초안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이루어진다. 초안단계는 다시 체계분석, 문제분석, 목표분석, 대안입법개발 및 예상가능

13) 사전입법평가 이론 및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20-623면 참조.

한 시나리오의 전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초안단계는 사전입법평가의 구상으로부터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규율범위의 분석(문제분석, 목표분석, 체계분석)이 수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대안입법 및 관련 시나리오가 설정될 것이며, 이후 대안입법에 대한 영향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실행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절차의 문서화, 체계적 평가 및 개개 절차와 수단을 이용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전입법평가의 평가도구 중에서 질적 평가요소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율대안에 대한 이용가치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비용추계 및 비용-효과분석기법을 이용한 경제성분석이 행하여진다. 마지막으로 대안입법을 대상으로 기존 입법평가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사회적 영향평가의 분석방법론을 이용해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실시한다. 그리하여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영향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가 활용

1. 서 언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는 현대국가에서 급증하는 법률들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 검토하여 보다 긍정적인 입법작용을 모색하고 법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경험적 사후평가 차원에서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률의 사전통제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법률의 평가가 대부분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비용의 산정과 그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법률 전체에 관련한 포괄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법평가제도를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법화가 지나치게 촉진된 결과법의 실효성, 수용성, 지도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법화의 원인 및 결과를 법정정책학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질을 높여 이려는 제도 즉 입법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는 법의 실효성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과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의 기법을 입법에 포섭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시장질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사회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의 역할은 규제(regul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규제정책은 대부분의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법사회학, 비용편익기법을 도입하는 등 입법행위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법평가의 의의와 관련하여 입법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정부결정을 평가하는 기타의 평가들 중의 하나로 보면서 또 하나의 규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과 같은 각종 평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률 준비과정, 입법과정, 시행과정 등에서 입법자가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분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수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이다. 이에 비해 입법평가는 각종 영향평가 또는 정책평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입법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

로 평가하여 과학적인 입법을 추구함으로써 법률내용과 법적용 결과 간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입법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입법평가는 입법 및 법률에 기초한 행정상의 의사결정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도 정책분석과도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영향(impact)을 분석(analysis)하는 것이지만 입법평가는 일종의 행정절차로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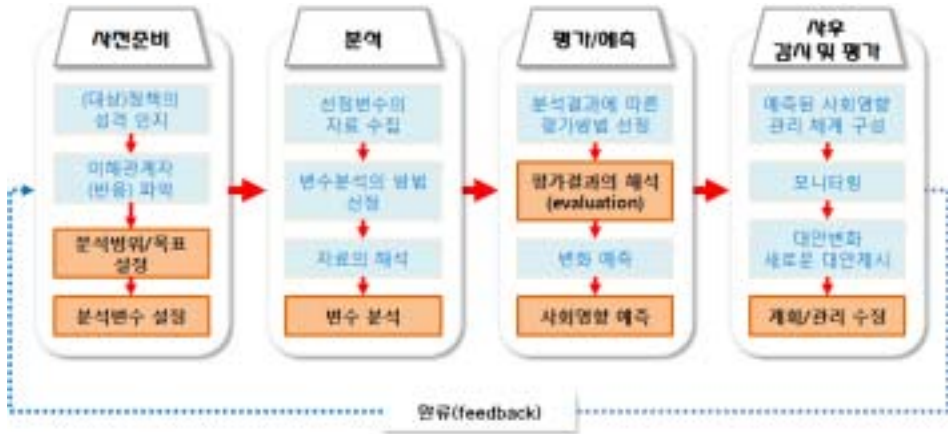
2.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1) 사회영향평가모형의 구성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를 위해서 사회영향평가의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구성에 앞서 사회영향평가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부 학술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가 시도되고 있었다.¹⁴⁾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를 비롯한 정책의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을 넘어서기 어렵고, 구체화된 모형화(model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 있는 모형의 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포괄적 관점에서 사회영향평가의 과정과 모형에 기초하여 구성한 사회영향평가의 모형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14) 정경희 외(2007)의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와 유사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전과 이후에 대한 비교시점의 연구였으며, 경제활동과 사적이전, 일상생활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세대간·세대내 재부분 효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를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고 있어 사회영향평가의 적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방법론적으로 유사한 연구로는 한국노동연구원(2007)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중앙대학교(2009)에서 수행한 “황사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연구조사(1)”, 조준모 외(2004)에서 수행한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의 정부학술연구용역이 있다.

<사회영향평가 모형>



구체적으로 모형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정부재정의 비용추정에 있어서는 연령별, 소득구간별(기초수급권자 등), 세대형태별(부부/단독)로 집단을 구분하여 추계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추정된 정부재정의 비용을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집단에 미치는 소득보장의 효과를 판단하고, 셋째, 분석된 소득보장(공적소득이전)의 효과를 토대로 장애인 삶의 질과 사회통합차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노동,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에서 사회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사회영향평가를 고찰하고,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와 ‘2008 장애인 실태조사’와 ‘중장기장애인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09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 등록장애인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연구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연구분석의 흐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여 연구 전체의 목적과 정합하도록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같이 장애인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분석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관계 및 협력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면 수급권자 집단에 따른 직접적인 관계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분석에 있어 자원의 소모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분석 가능한 범위와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요가 예상되는 정부재정비용을 추계하여 빈곤감소 효과와 삶의 질 향상효과를 예측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예측을 위해 영향평가모형을 구성할 것이며, 다섯 번째, 분석된 효과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영향평가모형을 통해 평가 및 예측을 실시하고 사후 감시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제 1 절 문제분석

I.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1.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정신자폐성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 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자폐성 장애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정의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¹⁵⁾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그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 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¹⁶⁾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15)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16)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들은 ① 신체기능 및 구조와 ②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3. 현행 사회보장법제상 장애의 유형 분류체계

(1) 지체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⑦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지체장애와는 별도로 뇌병변장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2005년 조사와 동일하다.

보행상의 장애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장애정도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3)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light-perception),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2005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교정시력 0.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

켰다.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교정시력 0.2 이하를 시각장애에 포함시켰다.

(4)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도 청각장애는 2005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즉,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이고, 아래의 항목들 중 ‘④’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된다.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즉,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 ③ 유창성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기타: 뇌성마비·지적장애·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①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 ②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이러한 2008년 실태조사에서의 언어장애의 정의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하다.

(6) 지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 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지적장애협회(AAMR)에서는 “지적장애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Schalock, et al., 1994: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지적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종도(profound) 지적장애로 분류해오던 미국지적장애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의 정도를 지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정기원 외, 199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장애의 발병연령은 18세 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영역들(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적장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7) 자폐성장애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자폐성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자폐성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시행령(1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된다.

자폐성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자폐성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르는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8) 정신장애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시행령(1999)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

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뎠어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
-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 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9) 신장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중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지만 만일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

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시행령 개정령(1999)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2008년의 신장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0) 심장장애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심장질환인 심장장애는 신장장애와 더불어 1999년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 요구도가 높아져 포함되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수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2008년의 심장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1) 호흡기장애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예에 의해 기존의 10개 장애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개의 장애

범주가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중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년)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검사에 의한 폐 환기기능, 동맥혈 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등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2008년의 호흡기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2) 간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된다. 이러한 2008년의 간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3) 안면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신체적 장애 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안면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얼굴전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거나 화상으로 인한 얼굴변형도 그 정도에 따라 안면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안면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때문이다. 이러한 2008년의 안면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4) 장루·요루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장루·요루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부위에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이다. 장루수술을 받게 되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결장을 통해 배출되며, 배변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해야 한다. 회장루는 아랫배를 관통하여 소장내 수술로 만든 개구인데,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및 항문과 함께 결장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회장루에 의한 대변수

술 후 대변은 소장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용한 주머니는 인공항문 주변에 맞는 보호용 피부벽을 가져야 한다.

요루는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기 위해 아랫배에 수술로 만든 개구이다. 요루수술을 하게 되면 소변은 더 이상 요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게 되며, 요루를 통해 배출된다. 요루는 항문괄약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요루수술을 한 사람은 언제 소변을 본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다. 대신 소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한다.

장루·요루장애에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 조성 시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2008년의 장루·요루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15) 간질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마지막 장애유형인 간질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 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간질이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간질의 원인은 다양하며 발작의 양상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간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방출되어 재발성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008년의 간질장애 정의는 2005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II. 국내 장애인 현황 및 분석

1. 장애인 일반현황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¹⁷⁾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포 및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2007년 11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등록 DB에 기재된 장애인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¹⁸⁾ 따라서 추정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엄밀히 분석하여 이로부터 추출되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장애인의 연령대 및 성별에 대한 분포를 살펴

17) 변용찬 외 6인 공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2009-, 2009. 4 참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5년 주기 조사에서 3년 주기로 변화되어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로 조사표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조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장애판별을 위해 시행되었던 가구 및 판별조사표가 없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표인 실태조사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1년~2005년 조사까지는 가구 내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또 올해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므로 “장애인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에 있어,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사회·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조사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내용의 확대와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사항목들이 추가되었다.

18) 등록장애인 DB상의 장애인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록장애인수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2,137,226명(2008년 3월말 기준)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음.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분포도

① 지역별 등록장애인 분포

(단위: 명, %)

지역	장애인수	백분율	지역	장애인수	백분율
전국	2,283,815	100.00	강원	91,324	4.00
서울	380,307	16.65	충북	85,507	3.74
부산	159,244	6.97	충남	116,560	5.10
대구	106,969	4.68	전북	123,655	5.41
인천	121,269	5.31	전남	135,837	5.95
광주	62,514	2.74	경북	152,368	6.67
대전	64,886	2.84	경남	163,019	7.14
울산	45,182	1.98	제주	27,626	1.21
경기	447,540	19.60			

② 지역별 장애인의 성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남	19,688	42,818	76,600	162,347	286,830	297,063	282,030	212,808	1,380,184
	여	11,094	22,646	33,441	63,321	120,056	165,494	225,599	261,969	903,620
서울	남	3,499	7,770	13,451	26,875	45,143	51,432	50,403	32,008	230,581
	여	1,914	4,037	5,770	10,672	19,016	29,571	38,515	40,231	149,726
부산	남	1,179	2,620	4,984	10,396	19,694	25,024	22,233	12,478	98,608
	여	696	1,407	2,244	4,192	8,318	12,835	15,645	15,297	60,634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지역	성별	연 령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대구	남	1,027	2,392	3,790	7,757	14,738	15,111	12,387	8,294	65,496
	여	569	1,116	1,748	3,213	6,146	8,231	9,788	10,662	41,473
인천	남	1,114	2,376	4,059	9,130	18,426	17,607	14,246	9,360	76,318
	여	651	1,262	1,739	3,316	7,031	8,887	10,760	11,305	44,951
광주	남	629	1,396	2,329	4,903	7,803	7,080	6,771	5,105	36,016
	여	360	749	1,126	2,080	3,618	4,338	6,060	8,167	26,498
대전	남	708	1,468	2,320	5,023	8,464	8,527	7,095	5,489	39,094
	여	396	782	1,127	1,927	3,635	4,702	5,803	7,420	25,792
울산	남	463	1,023	1,596	3,247	6,568	6,645	5,528	3,206	28,276
	여	239	541	663	1,288	2,571	3,418	3,851	4,335	16,906
경기	남	4,995	9,893	16,099	35,704	63,716	57,279	51,178	38,151	277,015
	여	2,763	5,242	6,679	13,154	24,453	30,916	41,889	45,429	170,525
강원	남	551	1,276	2,690	5,725	10,507	11,466	13,321	10,071	55,607
	여	352	742	1,205	2,339	4,568	6,377	9,337	10,797	35,717
충북	남	683	1,721	3,104	5,890	10,325	10,416	10,335	8,752	51,226
	여	396	958	1,449	2,389	4,513	5,791	8,412	10,373	34,281
충남	남	841	1,783	3,919	8,166	13,233	14,057	14,445	14,006	70,450
	여	461	998	1,671	3,135	5,728	8,201	11,573	14,343	46,110
전북	남	725	1,702	3,655	7,636	13,181	14,278	14,859	14,140	70,176
	여	440	960	1,672	3,247	6,286	8,594	13,483	18,797	53,479
전남	남	733	1,733	3,548	7,668	13,855	14,690	17,565	16,698	76,490
	여	385	921	1,668	3,125	6,471	9,031	16,191	21,555	59,347
경북	남	999	2,441	4,859	10,130	16,896	18,825	19,306	17,291	90,747
	여	532	1,204	2,070	3,931	7,519	10,946	15,698	19,721	61,621

지역	성별	연 령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경남	남	1,252	2,609	5,258	12,018	21,012	21,787	19,274	15,356	98,566
	여	790	1,381	2,149	4,328	8,481	11,899	16,006	19,418	64,452
제주	남	290	615	939	2,079	3,269	2,839	3,084	2,403	15,518
	여	150	346	461	985	1,702	1,757	2,588	4,119	12,108

위 표에서 지역별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여성(39.6%)에 비해 남성의 비율(61.4%)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10세 이하가 1.35%, 10~19세가 2.87%, 20~29세가 4.82%, 30~39세가 9.88%, 40~49세가 17.82%, 50~59세가 20.25%, 60~69세가 22.23%, 그 이상은 20.79%로 전체 장애인의 81% 정도가 4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로 갈수록 장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장애유형의 출현빈도가 유난히 높은 지역은 없으나, 경기도와 서울 지역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지역 및 장애유형별 분포¹⁹⁾

(단위: 명)

지역	유형		뇌 병 변	발달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장루	정신	정신 지체	지체 (변형)	지체 (상지 관절)
	간	간질												
서울	1,546	1,625	41,899	3,056	40,594	11,645	3,003	376	2,573	2,528	13,876	21,732	2,059	8,856
부산	496	819	18,678	914	17,276	4,221	1,963	236	1,000	857	7,278	8,412	882	3,775
대구	322	370	12,404	634	11,524	2,590	520	117	834	555	5,246	6,986	576	2,608

19)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계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유형 지역	간	간질	뇌 병 변	발달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장루	정신	정신 지체	지체 (변형)	지체 (상지 관절)
인천	304	494	11,347	801	12,271	2,965	560	128	856	625	3,808	6,947	566	3,224
광주	156	316	6,311	436	6,846	1,331	373	57	455	302	2,594	4,228	304	1,531
대전	211	281	7,329	483	6,680	1,528	365	63	375	339	2,423	4,070	341	1,883
울산	154	164	4,384	293	4,556	932	588	59	289	166	1,116	2,938	264	1,127
경기	1,657	1,714	47,166	3,199	44,727	11,344	3,083	457	3,167	2,426	14,784	28,862	2,267	10,855
강원	277	308	9,088	293	8,646	1,631	408	69	660	475	2,924	6,239	477	2,303
충북	206	333	8,368	355	8,313	1,525	465	81	563	486	3,519	7,547	459	1,888
충남	279	448	10,606	328	11,702	1,908	637	100	878	660	5,152	9,170	605	2,633
전북	232	628	12,367	373	11,662	1,654	466	106	973	520	5,673	9,161	662	3,044
전남	305	539	11,416	437	14,450	1,937	641	88	1,089	565	5,613	9,063	721	2,771
경북	379	510	15,972	517	16,016	2,571	1,067	182	1,080	723	6,577	11,692	816	3,223
경남	408	611	15,875	823	15,507	3,089	1,093	198	1,119	744	6,584	10,929	895	3,839
제주	113	183	2,837	196	3,833	632	220	19	222	139	981	2,251	217	497
계	7,045	9,343	236,047	13,138	234,603	51,503	15,452	2,336	16,133	12,110	88,148	150,227	12,111	54,057

애인 DB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장애유형과 등급별로 표본대상자들이 매우 산재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표본을 추출하기에는 조사 및 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직접적인 층화추출보다는 대규모 조사에 적합한 층화집락 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전국 16개 시·도별 읍면동을 1단계 추출단위(PSU)로 결정하여 각 지역별 읍면동수에 비례하도록 표본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전국 3,573개 읍면동 중에서 208개의 표본 읍면동을 추출할 경우 95% 신뢰도 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0.069로서 약 7%의 허용오차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표본수를 고려한 방식은 전국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고려하여 표본집락을 단순임의 추출할 경우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본 읍면동을 208개 추출하고 이들 표본 읍면동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고려한 층화 이중추출(stratified two-phas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변용찬 외 6인 공저, 전거서, 46-47면 참조).

유형 지역	지체 (상지 기능)	지체 (상지 절단)	지체 (전환 대상)	지체 (척추)	지체 (하지 관절)	지체 (하지 기능)	지체 (하지 절단)	청각 (전환 대상)	청각 (청력)	청각 (평형 기능)	호 흡 기	기타	계
서울	19,806	13,904	2,340	46,690	56,970	41,885	3,471	472	36,573	146	2,673	11	380,309
부산	10,196	8,441	304	16,993	23,018	17,779	1,895	49	12,474	46	1,238	4	159,244
대구	6,561	6,439	266	9,717	15,948	11,693	1,063	40	9,323	34	597	2	106,969
인천	7,790	8,185	1,187	15,303	16,379	13,516	1,333	251	11,539	48	833	9	121,269
광주	3,493	2,937	386	6,247	9,450	6,577	602	50	7,109	46	374	3	62,514
대전	3,751	2,720	363	7,934	9,540	6,934	662	55	6,096	21	439	0	64,886
울산	2,284	2,036	127	6,799	6,307	4,319	439	28	5,513	18	282	1	45,183
경기	26,653	23,390	3,073	56,463	63,850	50,089	4,700	503	40,050	158	2,883	24	447,544
강원	5,380	4,074	276	13,523	12,927	9,949	996	42	9,536	29	790	4	91,324
충북	5,105	3,549	854	10,137	12,852	8,768	915	150	8,381	38	648	2	85,507
충남	7,070	5,360	616	14,719	17,519	11,885	1,216	120	11,812	27	1,106	4	116,560
전북	7,072	4,796	1,292	15,876	20,082	13,095	1,246	307	11,746	45	577	1	123,656
전남	7,853	5,875	866	15,583	24,392	13,527	1,504	259	15,250	75	1,012	6	135,837
경북	9,204	7,104	653	17,555	21,981	16,178	1,825	128	15,449	62	896	8	152,368
경남	10,045	7,914	784	22,502	24,525	17,347	1,952	156	15,137	86	855	2	163,019
제주	1,399	899	121	2,412	3,504	3,475	239	23	3,012	10	192	0	27,626
계	133,662	107,623	13,508	278,453	339,244	247,016	24,058	2,633	219,000	889	15,395	81	2,283,815

위 표의 지역 및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급은 9.4%, 2급은 16.3%, 3급은 17.5%이며, 4급 이상은 56.8%로 과반수이상이 4급 이상으로 경증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④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

(단위: 명)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간	972	1,289	1,516	55	3,209	3	7,044
간질	189	1,069	2,964	5,120	1	0	9,343
뇌병변	63,519	67,180	57,258	21,944	15,692	10,425	236,018
자폐성	5,570	5,261	2,307	0	0	0	13,138
시각	33,915	8,712	13,153	11,808	19,683	147,313	234,584
신장	2,577	40,631	20	227	8,041	3	51,499
심장	665	2,749	11,849	10	177	1	15,451
안면	85	398	825	1,025	1	2	2,336
언어	143	1,530	6,944	7,503	7	4	16,131
장루	28	198	1,059	4,776	6,049	0	12,110
정신	11,684	42,954	33,489	4	0	2	88,133
지적	44,405	57,813	47,989	11	1	1	150,220
지체(변형)	353	407	790	897	1,695	7,968	12,110
지체(상지관절)	150	1,142	6,810	13,345	8,309	24,297	54,053
지체(상지기능)	4,016	15,151	34,557	21,438	24,930	33,564	133,656
지체(상지절단)	825	7,331	16,983	20,821	18,102	43,550	107,612
지체(전환대상)	1,000	1,812	2,803	2,377	2,955	2,502	13,449
지체(척추)	3,086	12,604	15,332	10,222	127,793	109,393	278,430
지체(하지관절)	990	4,217	19,731	102,333	119,484	92,470	339,225
지체(하지기능)	31,033	43,543	65,357	49,944	41,889	15,241	247,007
지체(하지절단)	1,207	2,403	8,881	6,967	1,484	3,116	24,058

장애유형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청각(전환대상)	82	886	468	453	305	431	2,625
청각(청력)	5,893	48,418	40,205	43,309	45,920	35,246	218,991
청각(평형기능)	20	131	221	198	244	74	888
호흡기	2,894	4,132	8,358	3	1	3	15,391
기타	10	16	15	13	14	10	78
계	215,311	371,977	399,884	324,803	445,986	525,619	2,283,580

위 표는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로서 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 중증장애보다는 경증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호흡기장애의 경우 중증 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빈도를 나타내는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10.3%), 시각장애(10.3%), 지체장애(척추, 하지관절, 하지기능: 37.9%), 청각장애(청력: 9.6%)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장애(변형, 상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관절, 하지기능, 하지절단, 전환대상)가 약 5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성별·연령별 장애인 빈도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남자가 58.6%로 여자 41.4%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남자 59.9%, 여자 40.1%)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남자의 비율이 82.0%로 가장 높았고, 간질장애는 여자의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다.

<성 비>

(단위: %, 명)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58.5	59.5	57.1	55.8	72.3	61.8	80.7	51.8	57.4	59.3	82.0	75.4	64.9	63.2	51.3	58.6
여자	41.5	40.5	42.9	44.2	27.7	38.2	19.3	48.2	42.6	40.7	18.0	24.6	35.1	36.8	48.7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0~64세가 32.0%를 차지하고 있어 2005년의 조사결과(65세 이상 32.5%, 50~64세 29.9%)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수명이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점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9.6%로 가장 높았는데, 뇌병변장애나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장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반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각각 78.5%, 30.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아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연 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0~17세	0.9	3.8	1.8	2.1	7.7	30.4	78.5	0.3	0.3	6.9	0.0	4.4	6.6	1.4	4.3	3.9
18~29세	2.1	1.9	1.6	1.7	5.8	26.6	18.5	6.0	4.6	3.5	0.8	1.8	8.6	0.6	11.3	4.0
30~39세	6.8	3.8	5.4	4.0	11.5	16.2	2.2	21.7	10.8	3.9	2.3	5.6	23.3	3.2	22.2	7.4
40~49세	19.4	8.0	11.9	9.6	17.8	15.5	0.1	35.2	21.7	9.1	7.0	26.5	22.2	6.9	36.2	16.7
50~64세	35.3	36.6	31.3	27.3	24.3	8.7	0.7	29.4	38.9	28.9	38.9	52.6	31.1	28.4	23.2	32.0
65세 이상	35.5	45.9	48.0	55.3	32.8	2.5	0.0	7.4	23.8	47.7	51.1	9.2	8.2	59.6	2.9	3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2. 장애인의 경제실태분석

(1) 경제활동참여율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직종)는 2005년의 조사결과(단순노무직 27.6%, 농·어업 19.0%,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12.3%)와 마찬가지로 주로 단순노무직(29.4%), 농·어업(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일반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은 사무종사자 14.3%, 서비스 종사자 12.5%, 단순노무직 11.7%, 판매종사자 11.3%의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구분	의회 의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 어업	기능원 ·관련 기능 근로자	장차· 기계 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비율	1.1	2.0	2.9	4.2	9.8	11.8	23.5	8.1	7.2	29.4	100.0
2005년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2.3	8.8	11.2	14.3	12.5	11.3	6.7	10.2	11.0	11.7	100.0

자료: 통계청,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4/4분기)□□, 2008. 5.

(2) 기초수급대상자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 중 18.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
구로 2005년의 조사결과(일반수급가구 1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와 의료·교육·자활 특례는 모두 0.4%로 미미하였
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6.4%), 간질장애(48.7%), 지적장애(43.5%)
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아니오	86.0	81.3	83.7	87.5	78.4	56.5	85.7	33.7	74.2	85.2	79.0	81.4	79.1	89.0	51.3	80.9
일반수급 가구	13.5	17.6	15.5	11.9	20.9	42.4	13.0	64.5	22.4	13.7	19.7	15.5	20.3	10.7	44.5	18.3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조건부 수급 가구	0.5	0.2	0.2	0.2	0.4	0.6	0.5	0.5	0.1	0.6	0.2	1.0	0.0	0.2	1.0	0.4
의료· 교육· 자활 특례	0.0	0.9	0.7	0.4	0.4	0.5	0.9	1.4	3.3	0.5	1.1	2.2	0.5	0.0	3.2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3.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2008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장애인등록 시기를 1988~1992년, 1993~1997년, 1998~2002년, 2003~2008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92년은 전체의 4.8%만이 등록을 하였으며, 1993~1997년은 전체의 5.5%, 1998~2002년은 전체의 31.1%, 2003~2008년은 전체의 58.6%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계속해서 장애인의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데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제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범주 확대시기와도 연관되고 있다. 즉, 1988년의 장애등록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심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았는데, 2000년에 10개로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신규로 확대된 해당 장애범주의 장애유형의 등록정도가 매우 높아졌으

며, 2003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2003년 신규 확대된 장애유형에서의 장애등록정도가 다른 장애유형에서의 경우보다 매우 높았다.

<장애등록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988년~1992년	5.9	1.1	4.4	5.0	7.9	8.9	0.4	0.0	0.0	0.0	0.0	0.0	0.0	0.0	0.0	4.8
1993년~1997년	6.9	2.7	3.1	4.2	5.4	11.2	2.4	0.0	0.0	0.0	0.0	0.0	0.0	0.0	0.0	5.5
1998년~2002년	31.9	28.6	36.6	28.0	34.9	33.5	23.4	28.6	39.5	30.3	0.0	0.0	0.0	0.0	0.0	31.1
2003년~2008년	55.3	67.7	55.9	62.7	51.8	46.4	73.9	71.4	60.5	69.7	100.0	100.0	100.0	100.0	100.0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등록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9.4%, 2급이 16.5%, 3급이 17.4%, 4급이 14.2%, 5급이 19.5%, 6급이 23.0%였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장애인은 전체의 1/4인 수준인 25.9%로, 2005년의 26.1%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중증(1~2급) 등록장애 비율은 신장장애(83.5%)와 자폐성장애(82.5%)가, 중등(3~4급) 등록장애비율은 언어장애(89.9%), 안면장애(79.3%), 간질장애(86.5%)가, 그리고 경증(5~6급) 등록장애비율은 시각장애(71.2%)와 지체장애(55.9%)가 가장 높았다.

<장애등급>

(단위: %, 명)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3.6	26.5	14.3	2.7	0.6	29.6	41.9	13.8	4.9	6.7	18.8	13.8	3.6	0.2	2.0	9.4
2급	7.4	28.5	3.8	22.3	9.5	38.7	40.6	49.2	78.6	29.2	26.8	18.3	17.2	1.9	11.5	16.5
3급	14.2	24.3	5.7	18.3	43.4	31.7	17.5	37.1	0.2	62.2	54.4	21.7	35.1	8.5	32.0	17.4
4급	18.9	9.4	5.1	19.7	46.5	0.0	0.0	0.0	0.6	0.0	0.0	0.8	44.2	39.5	54.5	14.2
5급	28.6	6.7	8.5	20.8	0.0	0.0	0.0	0.0	15.8	1.9	0.0	45.4	0.0	49.8	0.0	19.5
6급	27.3	4.6	62.7	16.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4. 장애인가구의 구성비

장애인가구의 총가구원수 분포에 있어서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4인 가구 19.8%, 3인 가구가 19.6%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3.0명으로 2005년의 3.1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총 가구원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인 가구	13.5	13.4	17.9	14.8	14.9	14.2	4.1	33.2	10.7	12.6	14.5	4.7	19.2	12.8	16.5	14.8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인 가구	32.9	33.7	31.9	36.2	25.7	13.2	3.6	19.5	35.0	37.9	44.4	22.2	23.5	46.1	26.1	31.3
3인 가구	18.9	19.7	16.5	20.9	26.3	21.8	11.4	25.9	23.2	19.3	19.0	28.1	23.1	17.4	29.5	19.6
4인 가구	20.1	17.2	19.5	15.5	22.4	31.3	59.4	14.0	16.7	17.1	10.2	31.8	21.0	12.3	18.2	19.8
5인 가구	8.9	10.9	8.6	7.5	7.1	12.2	16.8	5.4	8.2	6.6	7.8	9.9	9.6	7.1	5.9	9.0
6인 가구	4.2	4.0	5.0	4.4	2.1	5.0	4.8	1.3	3.3	4.7	3.2	2.3	2.9	2.9	2.5	4.2
7인 이상	1.4	1.3	0.5	0.6	1.5	2.2	0.0	0.8	2.9	1.9	0.9	1.1	0.8	1.4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평균 가구 원수	3.0	3.0	2.9	2.8	2.9	3.4	4.0	2.5	3.0	2.9	2.7	3.3	2.9	2.7	2.8	3.0

장애인가구 중 총 장애인수 분포에 있어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의 약 8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인 가구 13.7%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평균 장애인수는 1.2명이었다.

<장애인가구의 총 장애인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인	84.7	91.1	87.3	84.6	82.1	75.6	87.7	85.8	88.7	88.7	89.4	94.6	91.3	92.7	84.0	85.3
2인	14.5	8.4	12.1	14.2	15.4	20.6	11.3	12.8	10.9	10.1	9.7	5.0	8.0	7.2	14.5	13.7
3인	0.8	0.5	0.6	0.9	2.1	2.5	1.0	1.4	0.2	0.9	0.8	0.4	0.8	0.0	1.0	0.9
4인	0.0	0.0	0.0	0.2	0.4	1.0	0.0	0.0	0.2	0.2	0.0	0.0	0.0	0.1	0.5	0.1
5인	0.0	0.0	0.0	0.1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평균 장애 인수	1.2	1.1	1.1	1.2	1.2	1.3	1.1	1.2	1.1	1.1	1.1	1.1	1.1	1.1	1.2	1.2

2008년 조사대상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은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1.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3%, 장애인 1인 가구 14.8%의 순으로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8년	
	구성비	전국추정수	구성비	전국추정수
부부	11.0	214,669	24.3	518,466
기타 1세대(형제·자매 등)	22.4	434,739	0.6	13,591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구분	2005년		2008년	
	구성비	전국추정수	구성비	전국추정수
부부 + 미혼자녀	1.2	22,384	31.0	662,436
부부 + 기혼자녀	33.4	649,647	0.9	18,500
편부 + 미혼자녀	0.6	11,027	1.5	32,569
편모 + 미혼자녀	2.1	39,886	5.8	124,727
부부 + 양친	6.1	118,125	0.4	8,545
부부 + 편부모	0.1	2,265	2.3	48,499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2.3	44,480	0.6	12,224
조부모 + 손자녀	0.6	10,745	1.4	29,499
기타 2세대	1.6	30,671	1.9	40,889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	2.7	51,809	3.2	67,577
부부 + 자녀(미혼·기혼) + 편부모	2.7	52,582	5.7	122,835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7.5	146,239	5.5	117,593
1인 가구	5.5	107,522	14.8	316,099
비혈연가구	0.4	8,001	0.1	3,177
계	100.0	1,944,791	100.0	2,137,226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는 장애인 본인의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21.8%), 자녀(10.1%), 아버지(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신장장애는 배우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는 자녀가 가구주인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는 아버지가 가구주인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	60.7	41.2	62.0	54.9	48.7	20.3	4.2	41.7	44.0	45.3	65.4	51.3	57.4	59.4	38.7	53.9
배우자	23.8	25.6	17.8	22.0	21.2	7.0	0.4	14.3	33.2	29.8	17.0	30.5	17.1	25.6	20.7	21.8
자녀	8.0	21.2	14.7	14.8	9.3	0.7	0.2	2.5	10.8	13.9	12.6	8.0	0.9	11.1	4.7	10.1
자녀의 배우자	0.4	1.9	1.3	2.4	0.5	0.0	0.0	0.4	0.1	0.9	1.6	0.8	1.9	1.2	0.0	0.8
아버지	4.1	6.9	2.3	4.2	13.7	50.9	85.0	22.0	4.6	7.6	0.8	5.2	12.4	1.5	18.8	8.6
어머니	1.4	2.1	0.4	1.1	3.4	13.6	6.9	11.6	3.2	1.8	0.8	2.7	5.9	0.4	10.2	2.6
형제자매	0.9	0.9	0.7	0.3	2.6	5.4	0.1	6.1	2.9	0.6	0.4	1.1	2.1	0.3	5.2	1.4
조부모	0.0	0.0	0.6	0.1	0.0	1.2	2.2	0.0	0.0	0.0	0.0	0.0	0.9	0.0	0.5	0.2
손자녀	0.3	0.2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0	0.2
배우자의 부모	0.1	0.0	0.0	0.0	0.0	0.5	0.0	0.2	0.0	0.0	0.3	0.0	1.5	0.1	0.4	0.1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2	0.1	0.0	0.0	0.6	0.5	1.0	1.1	1.2	0.1	1.0	0.4	0.0	0.0	0.7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7	219,156	220,060	207,385	15,102	140,078	12,328	84,781	48,284	14,605	14,393	6,515	2,185	11,354	8,880	2,137,223

Ⅲ.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평가

1. 장애인 복지 환경의 실태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2,105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19.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27). 또한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의 인구비율 또한 1995년 0.8%에서 2000년 2.0%, 2007년에는 약 4.7%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의 규모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²⁰⁾

전체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장애인구의 증가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의 구조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고차원적 욕구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욕구를 넘어서 질적 욕구까지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구조 변화는 능동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단체총연맹이 5개영역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된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이 57.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연구 결과가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연구결과가 44.15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장애인구의 증가는 신규 장애유형이 추가되는 등 법정 장애범주의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인 등록 유도를 위한 국가정책, 사회인식의 전환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 30.1%, 소득보장 21.9%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보장,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차원의 안전망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주거보장	15.0	16.8	15.1	14.2	16.3	15.3	15.9	16.0	19.6	21.4	16.0	15.0	22.4	13.8	27.9	15.4
장애예방	3.2	3.6	4.1	4.5	4.9	3.4	0.9	6.0	1.8	4.1	6.0	3.5	4.2	4.4	3.8	3.6
보육·교육 보장	2.4	2.1	1.9	2.9	6.7	18.3	28.1	1.7	1.7	1.6	1.5	3.5	2.7	1.3	2.4	3.5
의료보장	29.7	36.5	34.0	33.8	23.0	12.2	8.1	24.1	39.7	39.9	39.7	44.6	24.9	39.9	18.3	30.1
이동권보장	3.3	4.5	4.7	1.2	1.4	1.3	0.1	1.0	2.5	1.8	2.2	0.4	0.5	2.1	1.6	3.1
고용보장	9.4	4.1	8.3	7.4	9.6	11.9	8.8	8.0	6.8	7.4	4.2	6.2	12.5	6.8	11.8	8.6
문화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1.4	1.1	0.1	2.5	2.4	1.7	4.3	1.3	0.7	1.0	1.7	0.8	1.1	1.1	0.7	1.4
소득보장	22.9	21.3	21.2	21.7	22.2	17.6	9.9	25.7	16.9	15.5	22.1	15.2	14.9	20.1	18.8	21.9
장애인 인권보장	5.7	4.5	2.5	6.2	5.2	8.7	15.2	10.0	6.0	4.1	2.1	4.7	5.5	3.7	8.6	5.7
장애인 인식개선	4.2	3.0	5.3	3.5	5.1	6.7	8.2	4.4	3.3	1.9	1.8	3.5	8.9	3.7	5.1	4.3
없음	1.8	2.3	1.6	2.0	2.3	2.3	0.0	1.1	0.9	1.0	2.3	1.8	2.5	2.5	0.7	1.8
기타	0.8	0.3	1.2	0.1	1.0	0.5	0.4	0.7	0.1	0.3	0.5	0.8	0.0	0.8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실태조사

특히 소득보장의 미비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형편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28.11%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1/4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빈곤도

<장애인 및 비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1.2 미만	최저생계비× 1.3 미만	최저생계비× 1.5 미만	최저생계비× 1.8 미만	최저생계비× 2 미만
비장애인	7.31	9.89	11.36	14.85	20.68	25.23
장애인	28.11	34.06	37.73	43.59	52.06	56.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위 표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최저생계비 미만 장애인의 비율 또한 중증 장애인 35.9%, 경증장애인 24.5%로 추정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등급별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1.2 미만	최저생계비× 1.3 미만	최저생계비× 1.5 미만	최저생계비× 1.8 미만	최저생계비× 2 미만
중증	35.90	42.68	47.34	52.62	60.23	64.23
경증	24.45	29.98	33.18	39.33	48.17	53.52

주: 1)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경증은 3~6등급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분석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3,300원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보호 간병인 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 의료목적의 비용지출이 다수를 이루었다. 즉,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간장애 87만 6천원, 안면장애 30만 6천원 등이었으며, 가장 적은 추가 소요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6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만 7천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가 3만 7천원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소비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중심으로 추가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다. 특히, 간장애의 경우 의료비가 80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이었다.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158.7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교통비	18.9	19.0	12.0	3.6	14.5	29.2	49.7	8.9	42.5	19.8	24.4	33.7	24.6	11.4	11.4	17.8
의료비	49.2	91.0	20.0	6.2	50.0	29.1	43.2	34.6	258.2	161.4	103.0	807.1	242.2	42.9	57.1	57.3
교육비	0.4	4.1	1.9	5.8	20.9	61.5	129.5	0.0	0.0	0.5	0.1	0.0	1.1	0.2	3.1	6.2
보호· 간병인	5.2	33.2	3.3	2.1	12.0	25.0	14.6	9.4	11.7	1.6	3.3	2.1	4.8	0.8	1.7	9.9
재활기관이 용료	0.1	2.6	0.0	0.0	4.9	19.2	56.2	0.0	0.0	0.0	0.0	0.0	0.0	0.0	0.2	2.0
통신비	0.2	0.4	5.3	5.6	2.0	0.8	1.1	0.1	0.3	0.2	0.5	0.1	0.8	0.4	0.4	1.4
재활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16.4	28.9	11.1	213.2	17.5	0.0	1.7	0.0	11.6	2.9	50.4	12.5	2.3	61.9	0.0	36.8
부모사후 대비비	3.2	7.9	0.9	5.0	12.9	34.6	46.5	6.8	5.5	1.1	0.7	8.8	26.8	2.5	7.7	6.2
기타	33.9	25.7	2.3	1.8	5.0	7.4	11.7	4.7	4.2	1.9	10.2	6.3	3.5	6.1	5.9	2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실태조사

제 2 절 목표분석

I. 정치적 목표분석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연금 미납자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육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추가비용이 25만원 정도 소요됨),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시 부대 결의한 내용(07. 6. 29)이며, 당시 국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키로 대 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사항이었으며,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최근 장애인계에서도 104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이 함께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청원해 온 바 있다.²¹⁾ 이 청원안은 17대 대선

21)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2년 6월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현실적인 장애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실현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당시 30여개 단체 참여)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후 이 공동위가 그해 10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

및 18대 총선 당시 여·야가 내건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연금 수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동 법안은 이러한 장애인계의 요구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바, 여·야가 동 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II. 목표의 설정

1. 저소득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

어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2002년 대통령선거기간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선거공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작년에 다시 찾아온 2007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등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으며, 금년에 새 출범한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와 18대 국회에게 이 공은 넘겨져 있다. 한편 2007년 5월에 장애인계는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결성하여 장애인연금법 제정 추진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중증장애인지초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이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하였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2004년부터 제도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사회통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크게 성장하였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I. 국민연금법

1. 급여의 종류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에 대한 급여로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이 있다.

(1) 장애연금(제49조제2호 및 제67조)

① 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중에 생긴 질병²²⁾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²³⁾에게 지급되며, 그

22)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3)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7조).

② 연금수급권의 획득 기준

장애연금은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이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의 상태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²⁴⁾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²⁵⁾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등급	장애의 상태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24)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5)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의 상태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등급	장애의 상태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③ 장애연금의 지급기준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된다. 여기에서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가입기간동안의 기여부분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연금급여의 내용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²⁶⁾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²⁷⁾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실제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하고 있다.

26)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4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시행령 제4조).

27)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여기에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²⁸⁾을 보건복

28)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한 금액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5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또한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제2항).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다.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다.

가.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나.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가.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3.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4.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지가즉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에 따른 추가산입 가입기간의 기준소득
월액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군 복
무기간에 따른 추가산입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조정된 금액을 수급
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
도 3월까지로 하고 있다.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
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
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나.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
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
2항을 준용한다.

5.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
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
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가. 임의가입자

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나. 부양가족연금액

a. 산정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바, ㉠ 배우자는 연 15만원,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함)는 연 10만원,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에게는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생계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다만,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²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³⁰⁾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대상자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형제 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29)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0) “특수한 사유”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②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③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④ 행방불명의 경우, 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⑥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

대상자	인정기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b. 산정 제외기준

상술한 부양가족적용대상 부양가족이 사망, 연금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과양된 경우,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함),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호전되어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부양가족이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함)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장애연금의 지급액

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보상금은 장애보상일시금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보상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 장애의 경우 적어도 수급권자 본인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의제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록 장애연금수급권자이지만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에 이르지 아니한바, 본인의 경제생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가족의 부양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2. 급여의 조정

(1) 장애의 병합 및 중복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중복급여의 조정

① 국민연금법은 제56조에서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에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에는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³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³²⁾,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③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장해급여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유족급여, ㉧ 「선원법」 제88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유족보상, ㉨ 「어선원 및

31)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제80조제2항).

32)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애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장애(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의 병합 및 중복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³³⁾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3. 장애연금액의 변경

국민연금공단에 의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³⁴⁾한 결과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3)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15조제1항).

34)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급여의 제한

(1) 연금수급권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제한

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이다.

③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험료 미납에 따른 제한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①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장애연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 라.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바, 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민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 나.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 다.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

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II.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법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각종 급여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제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군인에 한정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급여체계에 있어서 부분적 상이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범형식과 체계성은 공무원연금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본 평가보고서의 평가대상 중의 하나인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바³⁵⁾, 여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개정 2006.3.24>) ①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 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찰하도록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게 장애의 원인이 된 재해가 발생하기 전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³⁶⁾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 연금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과 같은 일시금형식의 지급방식은 예외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급여의 지급원인

(1) 장해의 발생

장해연금급여이던 장해보상금이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원인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이거나 퇴직 후라 할지라도 퇴직에 원인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이다(제51조). 여기에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36)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障碍)”연금이라는 표현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障害)”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후술하게 될 군인연금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함께 특수직역연금법제를 구성하면서도 이 법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장애(障碍)”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릇 ‘장애와 장해’ 양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선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지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로 정의된다. 그리고 ‘장해’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장애’와 ‘장해’는 엄격히 구분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범론적·해석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에서는 ‘장애’를 사전적 의미로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관련 규정을 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오류라 생각되며, 특히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장해’라는 표현은 국민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장애’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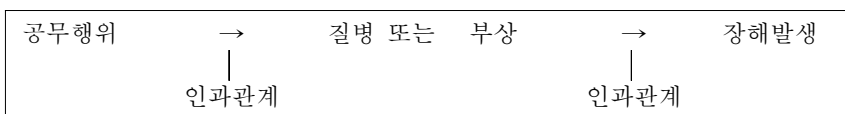
즉 공무원연금법은 장애 자체를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은 장애발생이 급여지급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족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현행법상 장애급여는 공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상태(폐질)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재직 중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2) 인과관계의 충족

공무원연금법상 장애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행위와 장애발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 장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³⁷⁾ 공무상질병의 여부와 시간적 연속성에 의하여 연계되는 장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은 제11조에서 “공무상 질병”을 정의하고 있는데, 당해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 ①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7) 공무원연금법상 인과관계 도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 ③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④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⑤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⑥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⑦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⑧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⑨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⑩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⑪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판례 등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성립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³⁸⁾ 그리하여 기존의 질병

38)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안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근무시간외의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긍정된다. 여기에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 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등이 그것이다.³⁹⁾ 또한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3항).

3. 급여의 유형 및 지급방식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은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과 폐질의 정도⁴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아울러 제14조에서도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입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③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④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⑤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⑥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⑦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⑧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12조).

39) 대법원 1989.10.24, 89누121판결; 서울고법 1995.7.14, 94구37808 등 참조

40) 폐질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한다. 또한 폐질상태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폐질등급으로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폐질발

일시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방식(장해연금) 또는 일시금방식(장해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1) 장해연금

현행법상 장해연금액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장애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2조). 현행법상 장애등급은 총 1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개별 등급별 연금액산정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장애등급	산정비율
1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80
2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75
3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70
4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65
5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60
6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55
7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50
8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45
9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40
10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35
11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30
12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25
13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20
14등급	보수월액 × 100분의 15

생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폐질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시행규칙 제24조).

(2) 장해보상금

장해급여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되는 장해보상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3) 장해등급 및 연금의 조정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 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 경우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장해연금액도 변경된다(제53조제1항). 아울러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폐질이 호전되어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해연금수급권은 소멸한다(제53조제2항). 이 경우의 폐질의 정도구분은 다음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폐질등급표에 의거하여 확정되며, 이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않은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한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하며(시행령 제45조),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제54조).

<폐질등급표(시행령 별표 2)>

등급	장해상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쇄골·용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는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해상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 관절을 굽히고 펴수 없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2 이상 폐질상태에 대한 종합폐질등급표(시행령 별표 3)>

폐질등급(1) \ 폐질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 결정방법 : 폐질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폐질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 는 난의 등급을 종합폐질등급으로 한다.

(4) 유족급여

① 수급요건 및 급여산정방식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중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장해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때에는 그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58조).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가.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있는 달수)]×1/36

② 수급권상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

가 종료된 때, 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㉕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제59조제1항 및 제2항).

4. 장애연금의 지급정지

(1) 수급권자의 특수직역으로의 재취업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위의 사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그 직에서 퇴직하고 폐질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장애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제55조제2항). 이 때 장애연금의 금액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장애연금액이 종전 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애연금액을 지급한다(제55조제3항).

(2) 수급권자의 일반 재취업

장애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⁴¹⁾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⁴²⁾

41) 여기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42) 근로소득금액은 ① 갑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을 중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43)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44)을 초과한 때에는 장해연금액에서 다음 표에서와 같이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45)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이 장해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55조).

<지급정지 기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 500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90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1천 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 500만원 초과	1천 125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일용직 근로자	일 10만원(정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위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43)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40조제2항).
- 44)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제47조제3항).
- 45)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을 산정하고,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이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다음 달의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시행령 제40조제3항).

5. 급여의 제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제62조제1항), 만일,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역시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제62조제2항).

또한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①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②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지급한다(제62조제3항, 시행령 제53조). 또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않는 때에도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제63조, 시행령 제54조).

Ⅲ.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은 장애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앞서 고찰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는 차이점 및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차이점을 보면 우선 앞선 두 연금법제에서 장해연금이라 불리던 것이 ‘상이연금’으로 명칭을 달리하며, 장애등급에 있어서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

여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군인연금법에서는 이와 같은 급여방식은 배제하고 있으며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애일시금 제도만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장애등급별 연금산정방식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군인연금법에서도 상이연금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상행위와 장애(폐질)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와 같다.

1. 상이연금

(1) 급여의 유형과 내용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⁴⁶⁾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⁴⁷⁾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⁴⁸⁾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사망일 때까지 지급되고 있다(제23조). 군인연금법은 장애자

46)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의미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제31조 규정만이 적용된다(제2조).

47) 이 법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디오파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1부터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1)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2)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3)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48) 군인연금법상 퇴직이라 함은 전역, 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제3조제1항제3호).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결과, 장애에 따른 소득보전은 고려하고 있지 아니다. 즉, 군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직접적 보호가 취해지는 것이며, 이는 공무원연금법에서와 동일하다.

상이연금의 산정기준에는 군인의 보수월액, 장애등급, 산정비율 등이다. 여기에서 보수월액이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각종의 수당액⁴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제3조제1항제1호). 그리고 연금액은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일정부분을 산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의 장애등급표 및 상이연금액 기준과 같다.

<장애등급표 (시행령 별표 2)>

등급	장애상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9) 여기에서의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시행령 제2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⁵⁰⁾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⁵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⁵²⁾ •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⁵³⁾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⁵⁴⁾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고용직 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고용직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 50)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51)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52)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3)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54)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상이연금액>

등급	연금액
1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장애등급의 병합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의 지급을 위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질을 병합·처리하는데, 제1급을 제외하고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거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종합상이등급표>

상이등급(1) \ 상이등급(2)	7	6	5	4	3	2
7	4	4	3	3	2	2
6	4	4	3	3	2	1
5	3	3	3	3	2	1
4	3	3	3	2	2	1
3	2	2	2	2	1	1
2	2	1	1	1	1	1

※ 상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상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상이등급으로 한다.

(3) 상이등급의 개정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제24조제1항). 그리고 상이등급의 재 측정결과 폐질상태가 「군인연금법」 제23조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연금수급권은 소멸된다(제24조제2항). 다만,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상이등급이 개정되어 수급권을 소멸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제24조제3항). 또한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상이등급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제24조제4항), 이 때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간주한다.

(4)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⁵⁵⁾을 초과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5)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제21조의 2 제3항).

2. 장애보상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제31조제1항). 현행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에는 크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는데, 이들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이연금과는 달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도 적용된다(제2조). 특히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⁵⁶⁾하며 급여액의 산정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지급하고 있다.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금액>

등 급	보상금액
1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6)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 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67조제3항).

3. 유족급여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⁵⁷⁾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족이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받고⁵⁸⁾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26조).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① 사망한 때, ②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④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⑤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제29조 제1항).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28조).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

57) 군인연금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②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③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④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⑤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제3조제1항제4호). 그리고 이들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父)가 없거나 또는 부(父)가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된다(제3조제3항).

58)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부양받은 사실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표 1).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제29조제2항).

아울러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이외에도 유족특별부가금이라하여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받던 가족을 위한 일회성 생계보장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족특별부가금이란군에 20년 이상을 복무하고 상이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그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사망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 \times 1/36$$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에는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급여의 조정과 제한

(1) 급여의 조정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만큼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⁵⁹⁾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1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제19조의3).

(2) 급여의 제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3조).⁶⁰⁾ 아울러 고의로 질병, 부

59) 상이연금 수급권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1조제2항).

60)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다. 왜냐하면 급여의 제한 또는 박탈은 재산권에 대한 부담적 성격이 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구형되었을 때를 전제하고 있으나,

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제34조제1항),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4조제3항).⁶¹⁾ 이 밖에도 상이연금 등의 급여지급을 위한 신체진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5조).⁶²⁾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유족연금에 있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이 조항은 그러한 명시적 전제 없이 “복무 중”인지 “복무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대한 위헌 소원(헌재결 2002. 7.18 2000헌바57 사건)에서 『급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 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앞의 제1항, 제2항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라고 그 사유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사유가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상의 표현은 입법의 결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립적 해석을 낳고 있는바,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급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하겠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위 결정례에 의할 경우 군인연금법의 당해 조항도 위헌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 61) 이 경우에는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시행령 제73조 참조).
- 62)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당해 상이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시행령 제74조 참조).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제34조제2항). 다음으로는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④ 복무기간이 1년 미만(입원기간을 제외한다)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 ⑤ 외국에 파견된 자로서 그 파견기간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중 정부로부터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금외의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 자의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75조).⁶³⁾

63) 이 시행령 조항은 재해보상금의 지급정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명백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과 관련된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는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결정례(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정사건, 헌재결 2003.9.25, 2001헌가22)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구체적인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된다. 아울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 요

(1) 장해급여의 성격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부상⁶⁴⁾ 또는 질병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재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⁶⁵⁾가 남아 당해 근로자의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히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통한 사회적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⁶⁶⁾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은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된다.』이사의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75조는 위 결정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으로 사료된다.

64) 부상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의한 사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육체적인 훼손상태를 말한다. 부상의 종류를 구분하면 첫째, 중상은 4일 이상의 휴업을 요구하는 재해로서 중대한 상태를 말한다. 둘째, 경상이란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로서 경미한 상태를 말한다. 셋째, 미상은 일반적으로 재해의 상태가 극히 미약한 상태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재해를 말한다(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명출판사, 2006, 340면 참조).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축체적 훼손(폐질)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조제1항제5호). 여기에서 영구적이라 함은 치유시 장래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정도를 말한다.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제5조제1항제4호).

현행법상 장애급여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일시금이 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애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제1항부터 제3항).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장애급여는 장기적인 임금대체급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⁶⁷⁾

(2) 급여의 수급요건

① 원 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의 주체, 업무상 재해의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상 생활상의 위험이 아닌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호한다. 따라서 우선 노동관계에 기초한 업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산업재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신체상의 피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존재 및 이것과 인과관계 있는 사고의 발생, 그리고 다시 사고와 인관관계를 갖는 피해, 즉 장애가 존재하여야 한다.⁶⁸⁾

6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77면.

68) 전광석, 전개서, 351면.

② 업무상 재해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⁶⁹⁾,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⁷⁰⁾, ㉣ 사업주가 주

69)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직무활동이 업무에 포함된다. 시간적으로는 작업시간 중, 공간적으로는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작업준비 중 및 작업종료 후의 행위로서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한 부수행위 역시 업무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현행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더 나아가서 법원은 업무상의 지시에 의하여 접대를 하러 가던 중, 하던 중 또는 접대를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법 1996.7.11, 96구121; 서울고법 1994.6.16, 93구25785; 서울고법 1994.1.13, 93구19933참조). 반면에 자유로운 휴가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회사의 휴양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성이 부인된다(서울고법 1996.12.17, 96구16867). 아울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7조제2항). 아울러 법원은 휴무일에 사용자의 지시없이 업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적인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성을 인정한바 있다(서울고법 1995.6.15, 94구4631). 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출장중의 행위 역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업무행위에 포섭된다. 다만,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및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위반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성이 부인된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7조제3항).

70) 현행법상 통근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12.24, 99두9027; 2000.3.10, 99두9025; 2004.2.26, 2003두13588; 2004.12.10, 2004두817 등). 그러나 통근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기), ㉞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㉟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해당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제37조제1항). 하지만 이러한 입법상태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행법은 대표적인 재해유형을 예시규정의 형식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는 다수의 경우가 구체적 사건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③ 피해(장해)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의 결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보호한다. 현행법은 피해의 유형으로 질병, 부상, 장해 및 사망 등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관리·이용권한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대판 2004.11.25, 2002두10124 참조). 아울러 일상 통근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이동행위 역시 업무상의 행위에 포섭된다(서울고법 1995.10.13, 95구13298 참조). 그러나 법원은 업무용 승합차를 이용하였다도 정상적인 통근로를 심히 일탈하여 2시간 이상 음주를 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이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서울고법 1995.12.21, 95가합84156 참조).

71) 현행법은 직접적 직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 역시, 그것이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성격을 갖고, 또 사용자에게 이익에 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행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 역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고법 1997.1.21, 96구23216). 그리하여 현행법에서는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시행령 제30조).

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급여의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에는 장애만이 포함된다. 특히 여기에는 신체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적 혹은 심리적 장애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에는 기존의 건강상태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혹은 잠재해 있던 질병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경우도 포함된다.⁷²⁾ 또한 산업재해의 치료과정 중에 피해가 악화된 경우(장애정도의 악화 등)에도 이 피해에 최초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산재피해로 인정되며, 나아가 퇴직 후 발생한 피해 역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긍정되면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로 인정된다.⁷³⁾

2. 장애급여의 내용과 수급요건

(1) 장애등급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장애등급을 신체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총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중복 및 변경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둘째,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72) 대판 1990.9.25, 90누2727 참조

73) 대판 1990.9.25, 90누2727; 서울고법 1993.12.3, 92구7810; 서울고법 1995.9.19, 95구2557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사고발생, 장애라는 사실관계들 속에 인과관계가 형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시행령 제53조제2항). 셋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넷째,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다섯째,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장애등급 표에 규정된 장애유형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기준>74)

등급	장애유형
1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유형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4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애가 남은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유형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유형
	<p>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정도 장애가 남은 사람</p>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 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등급	장애유형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12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정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정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정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2) 장애등급조정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애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제59조). 그리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특히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애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한다(제60조). 그리하여 장애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시행령 제53조).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하지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

급으로 한다. 그리고 현행법 별표에 규정된 신체장애등급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현행법상의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본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애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장애급여로 지급한다.

-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장애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애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장애급여의 내용

① 일반 장애급여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해 재해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부위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히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그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제57조). 이러한 의미의 장애급여는 장애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법상 장애급여에는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그 밖에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애보상연금을 되는 근로자가 취업정착 등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보상연금선급금(제57조제4항)과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이 해당 장애보상일시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장애보상연금 차액일시금(제57조제5항)이 있다. 아울러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불치유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다(제66조). 장애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소득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연금형태의 장애보상연금을, 8급에서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일시금 형태의 장애보상일시금으로만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장애등급 4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수급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연금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된 수급권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보험급여금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애등급 중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

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장애보상연금은 원칙적으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여기에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한다함은 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한다(시행령 제53조제5항). 따라서 이들 수급권자에게는 소득보전이 비교적 안전한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장해보상연금선급금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근로자가 취업정착금 등의 생계대책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당해 장해보상연금의 최초의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현행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제57조제4항).⁷⁵⁾

다.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⁷⁶⁾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

75)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시행령 제54조).

76) 여기에서 유족이란 첫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제57조제5항). 이 급여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이 해당 장해보상일시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입술지도 모르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라.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된 수급권자에게 신체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일시에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된 수급권자에게 신체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그 밖에도 내국인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처럼 연금의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별 해당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제14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5일분까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아래 표에 따른 장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둘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셋째, 이상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한다(시행령 제61조)

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의 유형별 지급기준>77)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② 상병보상연금

가. 의 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첫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둘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폐질)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그 상태가 계속되는

77) 산업재해보상법 별표 2 참조.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제66조).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휴업급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대체성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적 노동 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한 독특한 보상제도이다.⁷⁸⁾

현행법상 상해보상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폐질등급은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⁹⁾ 하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기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질등급기준>⁸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

78) 이상국, 전게서, 464면.

79) 장애급여와 상병보상과의 등급기준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급여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의 기준은 기간의 장단을 불구하고 4일 이상의 요양후 요양종결에 따라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력 상실을 보존하여 조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폐질등급은 상병상태의 증중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장기간의 노동력상실상태에 있어 생계가 곤란한 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폐질등급기준은 장애급여를 위한 신체장해등급과 유사하나 요양종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상국, 전게서, 464면 참조).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애 외의 장애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	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3급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나. 급여산정기준

상병보상연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그 지급액은 제1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제2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각각 지급한다. 이 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은 장해보상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해보상연금의 금액과 동액으로 되어 있다.

<급여기준>

폐질등급	연금액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다만, 현행법은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수급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상병보상연금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제68조).

<고령자 상병보상연금산정 기준>

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3.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은 첫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셋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넷째,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법정 소멸된다(제58조).

V. 장애인복지법

1. 보호대상자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제2조).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판단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

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류장애, 간질장애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등이 지체장애에 해당한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등이 시각장애자에 해당한다.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이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가 정신지체인이다(시행령 별표 1).

2. 급여의 종류

장애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의 할인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제14조, 제27조). 그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에는 장애수당과 의료비지원금이 있다.

(1)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제4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

현행법상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며 이에 따라 공공부조법제 영역에 보호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차이가 있다.⁸¹⁾

(2) 장애수당의 지급기준

① 일반 장애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수당을 지급대상이다.

② 장애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⁸²⁾	1인당 월 13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⁸³⁾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81)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시행령 제33조제2항),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8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을 의미하며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역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83) 경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장애인을 말한다.

③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수당 지급기준

장애등급의 변경	지급금액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5일 이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 전액 16일 이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의 50%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15일 이전 변경: 경증장애인 지급액 전액 16일 이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의 50%

④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애수당은 반환해야 한다.

(3) 보장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⁸⁴⁾

① 수급대상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한다. 여기에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여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이 있다.

84)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 a.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b.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c.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d.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라.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 지급기준

입소일 및 퇴소일	지급금액
시설입소일이 15일 이전	시설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입소일이 16일 이후	재가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퇴소일이 15일 이전	재가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퇴소일이 16일 이후	시설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③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만원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3. 기타 소득보장 급여

(1) 의료비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36조제1항). 이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등이 지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자녀교육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항에서는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으로 첫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둘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성격의 급여간의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상 교육비의 수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있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상 또 하나의 소득보전수당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제1항). 현행법상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는 장애인으

로 등록된 18세 미만⁸⁵⁾인 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 다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받으며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4) 보호수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제2항).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보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⁸⁶⁾에 따른 수급자일 것과 둘째,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⁸⁶⁾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제5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3항).⁸⁷⁾

4. 급여의 제한

(1) 비용의 징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85) 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한다.

86)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87) ‘보호수당’은 장관고시라 할 수 있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부정수급자⁸⁸⁾로부터 징수한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2)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으로 하며(시행령 제34조제1항),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만일 중지사유 발생한 달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유를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3) 징수절차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비용 납부통지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9조).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제2항).

VI. 체계분석결과

1. 규율영역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군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소득보장체계라고할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략은 보편적 소득보장 전력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88)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그 밖의 관계인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한다(『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수 있는데, 첫째,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방식이며, 둘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 그리고 셋째는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은 근로관계와 연계되어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대응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비기여식 사회수당 및 공공부조 방식은 사회보험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소득보장 시스템은 상호 대등관계에 있는 병렬적 조합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1차적인 시스템과 이를 보완하는 보충적으로 제2차적인 시스템이라는 위계적 형태로 결합된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들은 모두 사회보험법제 영역에서의 보호대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비 근로장애인이 아닌 사회보험에의 가입기간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 당해 장애인은 모두 사회보험법제 영역인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생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를 입고, 이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국민의 경우에는 입법체제적 특성상 사회보험에 포섭되지 못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공부조법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법제에서 의 보호대상이 된다. 즉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말미암아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며 보호대상이 된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입법체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상호연계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보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장애인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체계>

구분	소득보전급여	보충적 소득보전	추가비용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상)	기초노령연금 또는 사회보험법상 장애 연금		없음

2. 장애인 소득보장의 법적 구조

(1) 사회보험법제 영역에서의 소득보장제도

①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의 장애와는 무관하다.

② 200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66,660명에 불과하다(전체 국민연금수급자의 3.3%). 장애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액도 가장 중한 장애등급 1급일 경우에도 396,175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418,30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 장애연금만으로는 부양가족 있는 장애인의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③ 산업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50% 감액해서 지급한다.

④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타 공적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5%에 불과하다(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⑤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이 4명 중 3명꼴로 나타나 장애인 대부분이 공적 연금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⑥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체계에서는 업무상 재해나 사고로 인한 중도장애인의 소득보장은 가능하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장되지 않는다.

(2) 공공부조법제영역에서의 소득보장제도

① 2006년 12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수는 14만5천 가구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17.4%에 해당함. 그러나 이는 전체 장애인의 10%도 안되는 소수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제도가 있으나 보호수당은 미시행중이다.

③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정도와 경제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중증과 경증을 구별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기초수급자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 인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한다.

④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에게는 20만 원, 경증장애아동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⑤ 한편 수당은 아니지만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중·고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3) 기타 조세법제영역에서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의한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는 현재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② 세금감면으로는 소득세·상속세의 인적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 재활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③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PC통신·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고궁이나 국·공립공원 등의 입장료 감면,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④ 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및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⁸⁹⁾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

89) 정부는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다.

3. 분석에 따른 평가

(1) 급여수준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일면을 살펴보면, 현행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지원액수가 필요에 비해서 낮다는 문제와 함께 수당의 지급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범위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반계층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고, 지원단가도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산출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장애수당의 지급과 연동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생계급여수급요건으로서 자립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계층과 자립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근로무능력계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재하여 자립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애로 인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해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과 그 가구는 생계급여의 수급자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절대빈곤층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그 가구에 대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의 미약 또는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서 보건데,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능력의 상실 및 추가 비용 지출로 인해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거나,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및 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및 간접적 소득지원 제도 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 대상이 협소하고 지급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각 제도는 장애인 및 그 가구의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유효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구분	급여 종류	급여 성격	급여 형태	장애 평가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비고
장애 연금	장애 급여	소득보전 급여	- 기여 비자산 조사 - 현금 급여	의학적 손상 중심의 평가	61,762명 (등록장애인의 3.1%)	최저임금 대비 47%	- 낮은 국민연금 가입율(전체 장애인 중 21.6%만 공적 연금 가입) - 장애판정시 근로 능력 평가 부재 - 낮은 급여수준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구분	급여 종류	급여 성격	급여 형태	장애 평가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비고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 급여	추가비용 급여	- 비기여 자산조사 - 현금 급여	의학적 손상 중심의 평가	398,197명 (14,895명) (등록 장애인의 19.6%)	평균 추가비용의 72%(중증 기초수급자 기준)	- 추가비용에 못 미치는 급여수준 - 장애관정시 ADL, IADL 평가 부재 - 장애유형에 따른 지급액 차등 비고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일반 소득 보장 급여	소득보전 급여	- 비기여 자산조사 - 현금 급여	—	전체 수급자 가구 중 17.4%가 장애인 가구	보충급여 원리(최저 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 장애인 가구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부재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에서 배제)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장애 급여	추가비용 급여	- 비기여(비) 자산조사 - 현물 급여	의학적 손상 중심의 평가	—	제도에 따라 다양함	- 비기여 자산조사 급여의 경우 지원대상의 협소 - 비기여 비자산조사 급여의 경우 소득 역진성 - 포괄적 추가비용 급여인 장애수당과의 관계 정립 필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 중장기장애인복지발전방안연구

(2) 최저생계비의 하향화

최저생계비가 2008년 4인가구의 경우에 1,265,8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1988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이후 최하를 기록했다. 일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 또한 1999년 91%에서 매년

차츰 더 낮아져서 2008년에는 54%⁹⁰⁾로서 역사상 최하로 낮아졌다.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

(단위: 원)

년도	1988	1994	1999	2004	2007	2008
비율	45.0	38.6	38.2	31.9	31.1	3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 2007

* 2008년의 평균소득은 2004년~2006년의 평균소득 상승율인 4.4%를 적용하여 추정.

세계은행(IBRD)은 개발도상국의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33.3%, 선진국의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50%로 제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개발도상국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기관 및 국가들의 상대빈곤선(=상대적 최저생계비)>

주요기관 및 국가	상대빈곤선
OECD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 %
EU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 가구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 소득의 46~58%
일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자료: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0. 75면.

90) 44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852,020원 기준임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족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의 수준이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권리로서 자리매기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필수적이다.

예산에 끼워 맞추기식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에 근거해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의” 최저생계비에 전면적으로 유리될 수밖에 없다.

(3) 보장수준의 하향화

최저생계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수준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는 온갖 씨알에 닿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급여수준을 낮추어 왔는데, 2002년 ~ 2008년의 보장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았다. 즉, 4인가구의 경우에는 2002년에 최저생계비의 11.96%가 삭감된 채 생계급여가 지불되었으나 2008년에는 삭감율이 18.87%로 높아졌고,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02년에 11.96% 삭감된 채 지불되었던 생계급여는 2008년에는 23.33%로 높아졌음. 금액기준으로 보면 4인가구의 경우에 2002년에는 118,371원을 뺀 금액을 수급권자들에게 생계급여로 지급하였으나 2008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38,848원을 빼고 지급할 것이다.

<2002년 ~ 2008년의 기초생활 보장수준 변화>

(단위 : 원)

가구 원수	삭감율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9,719	1,055,090	1,170,422	1,205,535	1,265,848
	최고생계급여	871,348	886,901	959,424	989,467	1,027,000*
	삭감액수	118,371	168,189	210,998	216,068	238,848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가구 원수	삭감율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삭감율(%)	11.96	15.94	18.03	17.92	18.87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45,415	368,226	418,309	435,921	463,047
	최고생계급여	304,100	291,186	324,909	339,978	355,000
	삭감액수	41,315	77,040	93,400	95,943	108,047
	삭감율(%)	11.96	20.92	22.32	22.00	23.3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년도, 2007년 8월22일 보도자료

*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최고현금급여 1,060천원에는 주거급여 42천원이 포함된 것이다.

2008년 4인가구의 실질적인 보장수준인 최고생계급여는 1,027,000원으로서 올해의 989,467원보다 불과 37,533원이 더 많은데, 이는 2008년의 실질적인 생계급여 인상율이 3.65%에 불과함을 의미. 3.65%의 생계급여 인상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서 사실상 내년의 보장수준이 더 낮아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장애수당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1~2급과 일부 3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장애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것 같이 보임.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LPG보조를 삭감한 예산을 수당으로 전용한 데 불과하다.

장애인가구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지역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다.

<서울거주, 장애1~2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구의 최고현금급여>

(단위: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고현금급여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장애 수당	복지부	130.000					
	지자체	30.000					
최고현금급여		532.978	788,370	992.394	1.191.467	1.372.484	1.537.214

서울에 거주하는 일인가구 중증장애인은 다른 소득,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이나 간주부양비가 없을 경우에 현금급여와 장애수당을 합하여 43만3천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65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간주소득은 45만5천원이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3만3천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45만5천원밖에 지나지 않는다.

차상위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523천원으로서 이 사람이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 12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장애수당을 합하여 최고 575천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놀고먹을 때 받을 수 있는 53만3천원보다 불과 4만2천원이 더 많은 것이다. 출근에 따르는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된다.뿐만 아니라 이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료⁹¹⁾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하고 실제로 계좌로 입금되는 가처분소

91) 내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여 5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득은 오히려 근로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보다 더 적다.

차상위계층 가구에게도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없고 단지 장애수당만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12만원, 3~6급 장애인의 경우에 3만원만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을 규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장애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다. 1인가구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523,105원으로서 실제 소득에 실제로는 부양받지도 않는 터무니없이 높은 간주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더해진 것으로서 차상위계층으로 간주되는 가구들 중에는 사실상의 '비수급 빈곤층'이 많다. 실제로는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급권자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계층이 많은 바, 선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장애수당>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생계급여		0					
장애 수당	복지부	1~2급 120,000, 3~6급 30,000					
	지자체	0					

(4) 광범위한 비수급 장애빈곤층(장애인보호의 사각지대)

공공부조의 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이다. 한편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시장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나 시장노동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차하위이지만 정부는 차상위로 예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문제가 수급권자 문제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은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통계자료에 의존하더라도 수급자가구보다 많다.

장애인가구 중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은 대부분 비현실적으로 높은 부양의무자기준과 간주부양비 때문이고, 장애4~5급 중에는 추정소득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지만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

정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생계비	35만가구(2.3%)		
	수급자 72만가구(4.7%)	비수급빈곤층 75만가구(4.9%)	
	A B재산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의 적용에 따른 경직성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들의 선정기준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연계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

제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어 있다. 즉,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 두 가지인 셈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승용차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로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다른 복지제도들의 관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율 (%)		
기초생활보장	100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적용	
의료급여	120			
주거급여	100			
장애수당	120	일반재산과 자동차 4.17, 금융재산 6.26	적용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
장애아동부양수당	120		적용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30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20~200		미적용	차상위 계층까 지 생업자금용 자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120	일반재산과 자동차 4.17, 금융재산 6.26	적용	의료급여 2종에게 지원
경로연금	미적용	재산가액 적용	적용되나 기준이 기초생활보 장과 전혀 다름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율 (%)		
모부자가정지원	130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미적용	
소년소녀가장책정	100		적용	
영유아보육료지원	1층: 100 2층: 120 3층: 170 4층: 240 5층: 340 두자녀:340		3인가구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무료	120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미적용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적용	모든 재산 5		

이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에 연계하여 여러 가지 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부과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이 한꺼번에 박탈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은 어디까지나 복지수혜의 마지막 노선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의 소득을 벌면 장애수당이외에도 의료, 주거, 장애, 출산, 교육 등의 각종혜택이 중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은 차상위 이상이면 다른 여러 가지 부과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가급여 선정기준>

제도		선정기준	금액	비고
재활보장구 지원				수급권자 1종 무료 2종 15% 자부담 일반등록장애인은 20% 자부담
간병, 활동보조, 산모도우미 바우처제도		평균 소득의 80%		4인가구 기준 282만원, 36천원을 선납한 후 월 27시간 서비스 받음.
장애수당		차상위	3만원~1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0만원~2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감면		수급권자	1만5천원~4만원	
교육급여				등록금, 수업료, 학용품비 1급~3급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지급
주거 지원	주거급여		3만3천원~5만5천원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400만원	
해산급여			50만원	
장제급여			50만원	
쓰레기봉투			-	분기당20매
주민세 면제			개인균등할 5,000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			300원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경감				상수도는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하수도는 기본량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6) 비현실적인 장애판정 기준의 개선

현행 장애등급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능력과 별개로 책정된다. 예컨대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일지라도 이동권만 보장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면 다른 업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일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식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는 3급까지밖에 없어서 사실상 정신장애 4~6급은 치매와 마찬가지로 정상인으로 취급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4. 소 결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장애인의 소득지원정책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단가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 등과의 제도적 관련성을 검토해야하고, 연금수급을 결정하기 위한 장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장애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애수당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등과의 세밀한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수당제도를 승계하는 새로운 제도로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장애수당은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의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기회의 상실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설계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으로 보면 공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양 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더 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만일 양 제도를 공존시키는 경우 장애수당제도는 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하고, 장애인연금은 이를 제외한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보다 훨씬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차등지급의 구분은 경증과 중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한해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제도와 비교해 보면, 제도의 대상 인구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장애기준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개편 과제를 통해서 연구된 장애판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소득인정액의 70/100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일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 속한 사람과 이 기준을 근사하게 초과한 가구에 속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실제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고 장애기준 만으로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I. 주요국의 장애인연금제도의 운용

1. 영 국

영국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각출제(기여제) 사회보험제도와 비각출제(무기여제)인 수당이나 공공부조제도로 나눌 수 있다. 비각출제제 급여는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되지만, 소득·자산조사 유무에 따라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1) 사회보험에서의 장애급여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1986년부터 실시되었고, 최소한 28주 이상 취업불능상태가 계속되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28주까지는 법정상병급여나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장애급여에는 피부양자, 부양아동에 대한 가산금이 있다.

(2) 장애관련 사회수당

①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중증장애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28주 이상을 일을 할 수 없는 16-65세 사이에 장애인으로, 국민보험에 의한 법정상병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21세 이상에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노동력의 80% 이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수당에는 부양가족이나 부양아동에 대한 가산금도 지급한다.

②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개호부문)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이동부문)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된 사회수당제도이다. 장애생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해왔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개호수당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급여 급여이다. 이 수당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밤낮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에 지급된다.

(3) 공공부조

①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보조는 공공보조의 대표적인 제도로, 총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6세 이상이어야 자격수급권자가 되며, 일정 소득 미만인 장애인은 소득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의 보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학생인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보조는 조건이 충족하는 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데 4가지 급여항목 즉 개별 수당(Personal Allowance), 부양아동수당(Personal Allowance for a child or young person), 부가급여(Premium Payments), 주거비(House Cos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득보조는 일종의 보충급여의 성질을 가지며, 위 4가지 급여의 지급 가능한 금액을 합하여 가구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장애노동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장애노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저임금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구소득과 연계해서 지급된다. 이 수당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업을 얻는데 지장있는 장애나 질병이 있어야 하고, 일주일에 16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근로형태는 자영업이건 피고용이건 상관없으나 일시적인 직업일 경우 급여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이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③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독립생활기금은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기금을 받은 자는 개호인으로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16세 이상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생활수당의 개호부문에서 최고율을 받고 있어야 하고, 입소시설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이거나 공공부조의 소득기준보다 높은 소득일지라도 보호비용을 감안하면 공공부조 기준보다 낮은 소득수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미 국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병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으로서의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과 공공부조로서의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이다.

사회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이 받는 것으로, 한국의 실업급여와 유사하나 그 수급기관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한국과 일자리를 갖

을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다르다. 보충적 소득보장은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국의 장애인 수당과 유사하며, 보충적 소득보장의 급여상한선은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가구유형별 및 아동수별 빈곤선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회보험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적립방식의 노령연금제도이었으나 1939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1956년에는 장애급여, 1958년에는 장애노동자의 부양가족과 유족을 위한 급여가 추가되었다. 장애연금의 경우 보험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주는데 최고한도액이 있다. 미국의 장애연금제도는 연방공적 연금제도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액은 감소한다. 장애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 Medicare급여, 직업재활서비스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장애를 일시적 완전 장애, 영구적 완전장애, 일시적 부분장애, 영구적 부분장애로 구분하여 급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적인 급여수준은 부상 혹은 사망 당시 소득의 2/3정도이다.

(2) 공공부조

미국의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는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제도로서 1974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보충급여제도이다. 이 보충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한다. 아동들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

의 소득이 조사대상이 된다. 보충급여의 제정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므로 사회보험방식인 장애연금과 달리 무기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보충보장소득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가 정하는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일 본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공제)연금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경감해 주는 각종 수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 사회보험

장애인 연금보험에는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연금, 장애공제연금으로 구분된다.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는데,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보험자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선천성 장애를 가진 경에는 보험료 납부기관과 관계없이 20세부터 지급 받게 된다. 이 장애기초연금은 1982년부터는 재일외국인도 포함시켜 1962년 이후에 태어난 재일외국인과 1982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적용하고 있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이보다 경증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공제연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정도에 따라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3급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공공부조

① 특별장애인수당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② 장애아동수당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③ 특별아동부양수당

20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일정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와 수급대상 장애인이 장애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다.

④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수당제도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서 지급하는 연금이 빈약하여 각 자치단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나 개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⑤ 기타 경제적 부담경감제도

일봉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형태 이외에도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나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여객 운임 할인, 유도로로 통행요금 할인, 방송수신료 면제, 우편요금 감액, 복지용 전화용품의 이용요금 등 할인, 주택금융 혜택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스웨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연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험체계에서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급여에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일시장애연금(Temporary Disability pension),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 아동간호수당(child care allowance)등이 있다. 장애연금은 기초연금(AFP)와 부가연금(ATP)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세부터 64세까지의 전체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근로기록점수가 있을 경우, 부가연금의 수급도 가능하다. 부가연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연금(PTS: pension supplement)이 지급되며, 기타 급여로는 재활,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보충급여, 아동보충급여, 자동차지원금 등이 있다.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장애관련 급여 중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는 장애연금이 대표적이며 보충적 급여로 장애관련 수당과 그 밖의 일반적 성격의 부조가 있다.

(1)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보통의 경우, 장애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을 수부하기 이전 10년중 5년 이상 연금을 납입했다는 기여실적

이 증명되어야 하며, 만약 5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60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이전 30년 중 15년 이상 연금납입에 대한 기여실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직업병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기여기관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지급액은 퇴직연금에 준하는 액수이며,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마지막 급여액의 80%정도이며, 장애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개인연금산정수치기준의 60%에 해당되는 액수이기도 하다. 장애연금의 종류로는 근로불능인들을 위한 지급과 취업불능들을 위한 지급이 있다.

(2) 장애관련 수당

장애관련 수당으로는 노동자 보상금으로 질병부조와 의료·재활부조가 있으며, 자립생활을 보조하기위해 만들어진 급여제도로 장기요양수당이 있다.

(3) 일반부조

일반부조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달리 측정되며 기여실적이 필요치 않으며 자산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는다.

6. 호 주

호주의 장애인 생활보장제도는 연금과 수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1) 연 금

먼저 장애연금은 16세 이상,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상해, 혹은 장애로 2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를 일하거나 재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혹은 완전시각장애이거나 부양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시각장애인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완전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조사의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의사로부터 신체적 장애와 근로능력에 대한 확인서와 직업능력평가사로부터 직업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연금수급의 신체장애 조건으로는 신체장애 손상율표에 의한 신체장애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연금은 스텝요건이 가족상황(싱글, 자녀가 있는 싱글, 커플, 질병으로 인한 별거커플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고 장애연금 수급액도 신분(18세 이하·싱글·재가, 18세 이하·싱글·자립, 18-20세·싱글·재가, 18-20세·싱글·자립, 18세 이하·커플, 18-20세·커플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직업보조금, 학업보조금, 연금수령자 교육보충급여, 장애연금 추가급여, 의약품 수당, 임대수당, 원거리지급수당, 전화통화료 수당, 생활요금수당, 이동수당, 연금수령인 카드 등 다양한 동시수급이 있다.

(2) 수 당

질병수당은 질병이나 상해, 장애로 인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고, 뉴스타트 수당은 21세 이상의 만성 실업상태에 있거나 질병, 상해, 장애로 인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청년수당은 16세에서 24세까지의 전시간제 등록학생이거나 21세 이하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급여이다. 또한 이동수당은 직장일이나 여행 혹은 이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3) 보충급여

연금수령자교육보충급여는 교육과정에 있는 이들의 교육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추가비용보충 급여이며, 청년장애인보충급여는 21세 이하의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비용보충급여이다.

7. 프랑스

프랑스에서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제공하는 급여에는 장애연금과 각종 장애수당이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급여인 장애연금과 사회수당과 사회부조방식의 급여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정도를 측정하여 급여액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1)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기여조건을 충족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애연금의 수급자격 판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건강보험기금이고 실제 집행업무는 16개 광역건강보험기금과 128개 지역건강보험기금이다.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서 의학적 판정은 일반의 소견서를 토대로 지역건강 보험기금 자문의가 내리며, 연금의 최종적인 지급은 광역건강보험기금 소속 판정의가 결정한다. 장애연금에서의 장애란 의학적 기준 뿐만 아니라 직업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질병의 정도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 직업훈련 및 과거의 직업활동까지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의 발생 요건중 의료적 요건으로는 장애로 인해 피보험자의 노동 또는 소득의 3분의 2이상이 감소되어야 한다.

(2) 장애수당

장애수당에는 사회부조방식의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성인장애수당(AAH)’, 주거비용 보전을 위한 ‘주거수당(ALS)’이 있으며, 사회수당방식의 급여로서 2005년도에 신설된 ‘자립생활수당(Compensation Allowance)’이 있다. 성인장애수당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손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급여이다. 주거수당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부조방식의 급여로서 지역, 주거형태, 및 주거 비용 등을 기초로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자립생활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방식의 급여로서 활동보조인, 재활보조기구, 주택개조, 차량보조, 보조견 및 기타 비용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8. 스페인

스페인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기여식 장애연금과 비기여식 장애부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기여식 장애연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 기반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급여라면, 비기여식 장애부조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여식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 방식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1) 장애연금

장애연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는 영구적인 근로불능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해부학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제한으로 일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에서의 장애는 정도에 따라 부분장애, 경증영구장애, 중증영구장애, 최종증으로 구분된다. 부분장애는 이전 작업에 대한 부분적인 근로능력 손상(손상율이 33%이상)으로 24개월 지급한다. 경증 영구장애는 이전 작업에 대한 완전한 근로능력손상으로 완전장애연금의 55%를 지급하며, 중증영구장애는 어떠한 직업도 수행할 수 없는 완전한 근로능력 손상으로 완전장애연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다. 최종증은 완전한 근로능력손상에 더해 제3자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비용 급여성격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 연금 급여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노동사회부 산하의 사회보험청이며, 장애연금 지급에 필요한 장애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회보험청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심사팀에서 판정하고 있다.

(2) 장애부조

장애부조에서 장애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로서, 육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에서의 장애가 근로 능력에 관계된 것이라면 장애부조에서 장애는 주로 태어나면서 또는 아동기에서부터 비롯된 신체기능의 손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애부조는 장애 판정 결과 65%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며, 보호 또는 이동 등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장애부조 외에 추가비용 급여 성격의 부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분	소득보전 급여			추가비용 급여	
	기여식 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장애부조)	일반부조	비자산 조사급여	자산 조사급여
벨기에	○	○	○	×	○
덴마크	×	○	○	○	×
독일	○	○	○	○	○
스페인	○	○	○	○	○
프랑스	○	○	○	○	○
핀란드	○	○	○	○	×
아일랜드	○	○	○	×	○
이태리	○	○	○	○	×
노르웨이	○	○	○	○	○
네덜란드	○	○	○	×	○
오스트리아	○	×	○	○	×
포르투갈	○	○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미국	○	○	○	×	×
호주	×	○	○	○	○
일본	○	○	○	×	○
한국	○	×	○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72쪽, 2008. 7.

<주요 외국의 장애인관련 소득보장제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일본 (2008)	노령기초 연금	65세 이상	보험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기본급여:66,008엔 (장애 2급과 동일)						33,626 (2007)
*1986년 도입	장애기초 연금	20세 이후	-20세 이전에 발 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20세가 되 기 전에 1급 또 는 2급에 해당 하는 자 -20세 이전에 발 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 어 20세 이후에	- 기본급여 1급: 월 82,508엔 2급: 월 66,008엔 - 가산급여 · 아동: 년 227,900엔	특별장애 수당	20세 이상	- 1급, 2급 - 자산조사 요건 충족	월 26,440엔	병급 가능	*13,615 (1986)
					장애아복 지수당	20세 미만	- 1급, 2급 - 자산조사 요건 충족	월 14,380엔		
					특별아동 부양수당		- 20세 미만의 1급, 2급(3급, 4급 일부) 아 동의 부모	- 1급(1,2급): 월 50,750엔 - 2급(3,4급): 월 33,800엔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 *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임 - 자산조사 요건 충족				- 자산조사 요건 충족			
아일랜드 (2009)	기초노령 연금 State Pension (Non-Cont ributory)	66세 이상	- 기여 연금 비수급자 - 일정소득 이하	개인: 최고 월 876유로(*80세이상 최고 월 916유로) 부양: 성인-월 560.4유로 / 아동- 월 96유로	보호자 수당 (Carer's Allowance)	18세 이상	지속적 보호 가 필요한 자 가 있으며, 일 정 소득 이하	1인 보호자: 최고 월 856 유로 (*66세 이상 인 경우 월 928유로) 2인 이상 보 호자: 최고 월 1,284유로	병급 가능	45,027 (2007) *2,303 (1970)

제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66세 이상 인 경우 월 1,392유로)		
	장애부조 (Disability Allowance) *1953년 도입	16~ 65세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자 -일정소득 이하	개인: 최고 월 817.2유로 부양: 성인-월 542.4유로 / 아동-월 104유로	이동수당 (Mobility Allowance)	16- 65세	보행에 지속 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최고: 월 208.5유로 최저: 월 104.25유로		
					장애아동 수당 (Domiciliary Care Allowance)	16세 미만	16세 미만의 장애아동 *비자산조사 *16세부터는 장 애 부 조 수급	장애아동 1인 당 최고 월 1198.4유로		
	시각장애 부조 (Blind Person's	18세 이상	-중증등록시각 장애 -일정소득 이하	개인: 최고 월 817.2유로 (*80세이상 857.2유로)	시각장애 수당 (Blind Welfare	18세 이상	시각장애부 조 수급자	1인: 월 254.4유로 2인(시각장애 인부부): 월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Pension) *1920년 도입			부양: 성인-월 542.42유로 아동-월 104유로	Allowance)			508.8유로		
덴마크 (2008) *1984년 도입	기초노령 연금 (Folke- pension)	66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자	-기본급여: 최고 월 683.3유로 + 보충급여(1인가구: 최고 월 687.9 유로 / 2인가구: 최고 월 321.3 유로(1인기준)) *거주기간 및 소득에 따라 차등(40/1~40/40) -부양급여: 없음 -부가급여	장기요양 현금급여			재활보조기 구, 활동보조 인 고용 등의 비용 지원	병급 가능	35,961 (2007) *13,813 (1984)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Allowance(helbredstillæg): 의료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 본인부담금의 85% 보전 • Heat Allowance(varmetillæg): 난방수당 • Personal supplement (personligt tillæg): 약값등 지원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기초장애 연금 (førtids- pension)	15~ 65세	-어떤 종류의 유 급고용에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영 구적으로 근로능 력이 상실된 자 -일정소득 이하인자	-기본급여: · 1인가구: 최고 월 2,044.2유로 · 2인가구: 최고 월 1,737.7 유로 *거주기간, 소득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3/40~40/40) - 부가급여 · Special supplement (merudgiftsydelse):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년 805.3유로 또는 월 67.1 유로 초과하는 자로서,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개인적 상황 및 추가비용 수준에 따라 차등 *소득조사 안함						
핀란드 (2008) *1956년 도입	기초노령 연금 (Kansaneläke)	65세 이상	-타 연금소득이 일 정 수준 이하	-기본급여: · 월 최고 495.4 ~ 558.5유로(결혼상 태에 따라 차등)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양급여 · 아동: 월 19.5유로 -부가급여 · Disability Allowance for Pension Recipients (Eläkettä saavan hoitotuki): 월	연금 수급자 보호수당 Pensioners' care allowance (Eläkkeen- saajien hoitotuki)	연령 제한 없음		보호수준에 따라 월 53.47 ~ 281.46 유로	병급 가능	34,718 (2007) *3,343 (1970)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54.9~288.5유로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 Pensioners' housing allowance (Eläkkeensaajien asumistuki): 거주기간, 소득 및 주택비용에 따라 차등						
	기초장애 연금 (Kansaneläke)	16~ 64세	-16-64세로 적합 직종에서 영구적 으로 무능력한 것 으로 평가된 자 -타 연금소득이 일 정 수준 이하	-기본급여: · 월 최고 495.4 ~ 558.5유로(결혼상 태에 따라 차등)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양급여 · 아동:	장애수당 Child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allowance		기초연금 비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 지 출이 있는 자	월 81.83~ 370.24유로 * 장애정도, 보호욕구 및 추가비 용 수준에 따라 차등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월 19.5유로 -부가급여 · Disability Allowance for Pension Recipients (Eläkettä saavan hoitotuki): 월 54.9~288.5유로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 Pensioners' housing allowance (Eläkkeensaajien asumistuki): 거주기간, 소득 및 주택비용에 따라 차등	(Vammaistuki)					
					특별보호 수당 Special Care Allowance (vammaistuki)		16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근로가 어려운 자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노르웨이 (2008) *1966년 도입	기초노령 연금 (folketrygd- loven)	67세 이상		-개인급여 · 독신: 최고 월 731.5 유로 · 기혼: 최고 월 621.8유로(배우자 가 연금을 수급하거나 일정 소득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양급여(소득조사 실시) · 배우자: 최고 월 365.8유로 · 아동: 최고 292.6유로						53,477 (2007) *3,267 (1970)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부가급여 · 독신: 580.2유로 * 연령 및 소득비례노령 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차등						
	기초장애 연금 (folketrygd- loven)	18~ 66세	근로능력손상이 50% 이상인 자	-개인급여 · 독신: 최고 월 731.5 유로 · 기혼: 최고 월 621.8유로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하거나 일정 소득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부양급여(소득 조사 실시) · 배우자: 최고 월 365.8유로 · 아동: 최고 292.6유로 -부가급여 · 독신: 580.2유로 * 연령 및 소득비례장애 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차등 · 추가비용급여 (grunnstønad): 추가비용 수준에 따라 월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73.1~366.3유로 · 보호급여(hjelpe- stønad):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성인 월 131.2유로 / 아동 월 최고 787.1유로						
스웨덴 (2008) *1913년 도입	기초노령 연금 (garanti- pension)	65세 이상	소득비례노령연 금 수급권이 없 거나 적은 자	-개인급여 · 독신: 최고 월 769.5 유로 · 기혼: 최고 월 686.48유로 *거주기간, 장애정도 및 소득비례장애연금	보호수당 Assistance Allowance (assistanser sättning)	65세 까지 *65세 이전 부터 수급 했던 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가지 고 있으면서 주 20시간 이 상 보호가필 요한 자		병급 가능	36,603 (2007) *4,610 (1970)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액에 따라 차등 -부양급여 · 배우자: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부가급여 · 주거급여(소득조 사): 기혼 월 569유로 / 독신 264유로 · 특별주거급여(자 산조사): 기혼 월 656유로 / 독신 328유로							
					장애수당 Disability Allowance (handikapp ersättning)	19세 이상 *65세 이전 장애 발생자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도움 이 필요하거 나 특별한 추 가지출이 있 는 자	최고 월 249.3유로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기초장애 연금 (garantiers ättning)	19~ 64세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손상된 자 -소득비례장애연 금 수급권이 없 거나 적은 자	-개인급여 · 30세이전: 최고 월 849 유로 · 30세이상: 최고 월 867유로 *거주기간 및 소득비례노령연금 액에 따라 차등 -부양급여 · 배우자: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부가급여 · 주거급여(소득조 사): 월 476유로	장애아동 보호수당 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 (vårdbidrag)		19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자	최고 월 903.2 유로		
					자동차 수당 Car allowance (bilstöd)	18~ 65세	장애로 인해 대 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본급여: 6,344유로 부가급여 (소득조사): 최 고 4,299 유로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스페인 (2008) *1990년 도입	노인부조 (Pensión de jubilación no contributiva)	66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인 자	-기본급여 1인가구: 월 383.2유로	장기요양 현금급여					31,586 (2007) *13,300 (1990)
	장애부조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18~ 65세	-장애율 65% 이상 -일정소득 이하인 자	-기본급여 · 장애율 65% 이상인 자: 월 383.2유로로 · 장애율 75% 이상이면서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월 574.8유로 -부가급여: 장애율 75% 이상인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자로서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월 470.3유로 지급						
프랑스 (2008)	노인부조 (Solidarity allowance for the elderly: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65세 이상 (장애 인은 60세 이상)	저소득 연금수급자	-기본급여 · 1인가구: 최고 월 643.3유로 · 2인가구: 최고 월 1,126.8유로	APA (Personal independence allowance)	60세 이상	일상생활수행 에 상당한 제 약이 있는 자		병급가능 * 수당 중 APA, ACTP, PSD 중 1개 급여만 수급	32,686 (2007)
					ACTP (Compen- satory allowance for third	60세 이상	가정 내 수발 자 고용 또는 보호자가 제 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			*5,797 (1975)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personnes âgées) *1941~19 63년 도입				person) PSD (Special dependency allowance)	60세 이상	한 비용 보전 장애율이 80% 이상이면서 일 상생활수행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가능	
					AES (complément d'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DPA (Allowance for personal	20세 까지	최소 80%이상 의 장애율을 가진 아동	최고 월 1,010.8유로		
	장애부조 (Allowance for disabled adults: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1975년 도입	60세 미만 *60세 이후 노인 부조로 전환	장애율이 80%이 상이거나 또는 50 ~79%인 자로서 전 문직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고 용되지 않은 자	-기본급여 1인가구: 최대 월 652.6유로 -부가급여 · 독립주거지원급여 (장애율 80%이상): 월 104.77유로 · 소득보전급여(근 로능력5%미만):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월 179.31유로	autonomy)					
영국 (2008)	기초노령 연금 (Over 80's Pension)	80세 이상	타 사회보장급여 소득이 완전 기 초연금(full basic state pension)의 6 0% 미만인 자	월 247.5유로에서 타 사회보장급여 소득을 제한 금액 *1세 증가할 때마다 5페니 추가	보호수당 (Attendance Allowance)	65세 이상 (최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간 이상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자	최고 월 283.4유로	병급 가능	35,669 (2007) *24,249 (1999) *11,272 (1984)
	노인부조 (Pension Credit) *1999년 도입	60세 이상	기준 소득 이하 인 자	-개인급여 · 1인: 월 628유로 · 2인: 월 956유로 -부가급여: 65세 이상이면서 저축액이 있거나 공적연금(State pension) 비수급자인 경우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지급						
	기초장애 연금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1984년 도입 *2001. 4월 이후 신규 수급자 없음 (폐지)	16~ 64세	20세 이전(학생인 경우 25세 이전) 에 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장애로 인 해 일을 할 수 없 는 자	-개인급여: 월 261.28유로 -부양급여: 성인-월152유로/아 동-월48유로 -부가급여: 장애발생연령기준 · 40세이전: 월 71.2유로 · 40~49세: 월 41.4유로 · 50~59세: 월 24.3유로	이동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Mobility component) 보호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Care component) Disabled Students' Allowance	6세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보행에 어려움이 있 는 자	최고 월 197.8유로		
						생후 3개월 이후	최소 3개월간 이상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자	최고 월 283.4유로		
						없음	신체장애, 정 신장애 및 학 습장애를 갖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DSA): -Special Equipment Allowance -Non- Medical Helpers Allowance -General expenditure Allowance -Travel Allowance		고 있으면서 고 등 교 육 과 정 중에 있는 장애 학생			
	장애부조 (Employ- ment Support Allowance	16세 이상	-장애로 인해 큰 로능력이 손상 된 자 -일정 소득 이하 인 자	-개인급여 · 고용서비스참여자 : 월 408.4 유로 · 고용서비스비참여 자: 월 432.7유로	보호자 수당 (Carer's Allowance)	16세 이상	AA 또는 DLA (Care compo- nent 중간 및 최고수준수급 자) 수급자를	최고 월 213.8유로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Income Related) *2008. 10월 도입						주 35시간 이 상 보호하는 자 로서 일정 소 득 이하인 자			
미국 (2007) *1935년 도입	노인 · 장애부조 (SSI)	65세 이상	자산조사 요건 충족	1인가구: 최고 월 623달러 (882천원) 2인가구: 최고 월 934달러 (1,322천원)						45,489 (2007) *4,998 (1970)
		65세 미만	-장애로 인해 근 로능력이 손상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자	1인가구: 최고 월 623달러 (882천원) 2인가구: 최고 월						

제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자산조사 요건 충족	934달러 (1,322천원)													
호주 (2006) *1908년 도입	기초노령 연금	65세 이상	자산조사 요건 충족	1인가구: 최고 월 999달러 (926천원)	보호자 수당 (Carer payment)	-중증장애 인 및 노 인을 보 호하고 있는 자			병급 가능	35,666 (2006)							
				2인가구: 최고 월 834달러 (773천원)													
											보호자 수당 (Carer Allowance)	-중증장애 인 및 노 인을 대 상으로 지속 적인 보 호서비 스를 제 공하 고 있는 자					
					임대수당	-자산조사 요											

제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Rental Allowance)		건 충족			
	기초장애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16~ 64세	-신체장애율 20% 이상이면서 근로 능력 손 상 으 로 인해 주당 15시 간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자 -자산조사 요건 충족	1인가구: 최고 월 999달러 (926천원) 2인가구: 최고 월 834달러 (773천원)	의약품 수당 (Pharma- ceutical Allowance)		-자산조사 요 건 충족			
					전화수당 (Telephone Allowance)		-자산조사 요 건 충족			
					원거리 수당 (Remote area supplement)					
					이동수당	16세 이상	혼자서 대중 교통 수 단 을 이용할 수 없			

제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국가	기초연금 · 범주형부조(소득보전)				수당(추가비용보전)				비고 (연금과 수당 병급 여부)	1인당 GDP (US \$)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급여수준	구분	연령	장애 및 기타 수급 요건	급여수준		
							는 자			

<장애급여 수급율의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노르웨이 (2004)	폴란드 (2004)	스위스 (2004)	호주 (2005)	룩셈부르크 (2005)	스페인 (2004)	영국 (2004)	한국 (2006)
수급률	10.1	9.2	5.4	5.0	17.1	2.8	7.0	1.1

※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2006, 2007.

※ 연령기준은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0~64세, 호주, 스페인, 영국, 한국의 경우에는 15~64세임.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국가명	1990년	1999년
오스트레일리아	0.51	0.86
오스트리아	1.30	1.75
벨기에	1.32	1.06
캐나다	0.46	0.67
덴마크	2.31	2.28
프랑스	0.73	0.83
독일	1.05	1.01
이탈리아	1.69	0.95
멕시코	0.09	0.20
네덜란드	3.42	2.65
노르웨이	2.23	2.36
폴란드	2.39	3.28

국가명	1990년	1999년
포르투갈	1.32	1.03
스페인	0.96	1.24
스웨덴	2.03	2.05
스위스	1.05	1.83
터키	0.03	0.07
영국	0.88	1.27
미국	0.56	0.71
한국	0.00	(*2005년 기준) 0.14

자료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연금법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8, 227면.

II. 입법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외국의 장애연금제도의 평가

(1)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보전 급여 중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연금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득보전 급여의 포괄성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국제추세와 걸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기회의 상실에 대응하기위한 소득보장 전략으로서 3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1차 사회안전망은 기여에 기반한 장애연금제도이며, 2차 사회안전망은 근로활동 연령대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여식 장애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3차 사회안전망은 장애연금 또는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장애인(즉, 근로능력평가에서 손상정도가 덜하여 제외된 경증 장애인)중 자산조사 요건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조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3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차 사회안전망, 즉 기초장애연금이나 장애부조 없이 1차 사회안전망(장애연금)과 3차 사회안전망(일반부조)만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일반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합형 사회부조이지만,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부조를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언제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부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 1970년대 이전에 도입한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1980년대 이후에 도입한 일본, 덴마크, 스페인, 영국과 비교할 수 있다. 일본은 1986년에 기초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 13,615이었고, 덴마크는 1984년에 기초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 13,813이었으며, 스페인 1990년에 기초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 13,300이었고, 영국은 1984년에 기초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 24,249이었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1인당 GDP가 약 \$ 00,000이었다.

(4)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영역 중 보호간병 또는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 급여가 보존하고자 하는 주요 지출 영역이다. 여기서 기여식 장애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비용 급여는 조세가 아닌 연금 재원을 통해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서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장애연금수급자의 추가비

용 급여는 연금 재원에 의한 별도의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득보전 급여의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부조의 동시 지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비용 급여는 소득보전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비용 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소득보전 급여는 대개 근로연령 가능 이후(18세 또는 20세 이상)부터 노령연금(노인 부조)수급전 연령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인정하여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부국가에서는 보호자 수당 등을 통해 별도의 경제적 지원등을 하고 있다.

(7)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기여기간, 보험료, 납입액 및 근로능력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진 연금액 산정공식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조와 지급수준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8) 소득보전 급여의 경우 신체기능 손상과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주요 수급대상이다.

2. 국내법과의 비교분석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소득보전의 급여와 추가비용보전의 급여로 나누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제도운영방식

첫째, 기여식 연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애연금으로서, 예컨대,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 일반사회부조방식에 따른 급여로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받는 생계급여를 말한다.

세 번째 방법은 근로활동연령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기여식 장애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방법이며, 이는 무기여식 연금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3가지의 소득보전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부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장애부조를 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무기여식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2) 급여제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급여방식은 자산조사급여 또는 비자산조사급여 형태의 다양한 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산조사급여 형태의 장애수당으로 추가비용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일반부조에 의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급여는 기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

둘째, 기여식 장애연금 역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부조에서 장애부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율(장애급여 수급자를 총인구수로 나눈 것)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 지출 비율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제 5 절 대안입법 및 시나리오

I. 대안입법 1(장향숙의원 발의안)

1. 입법목적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달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치료비, 교통비 등 월 1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장애인이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함(안 제3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3)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

(4) 정보접근급여는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5) 건강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8조).

(6)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인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안 제9조).

(7)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10조).

(8)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II. 대안입법 2(박은수의원 발의안)

1. 입법목적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연금 미납자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2005년도 기준).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상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추가비용이 25만원 정도 소요됨),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 가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연계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장애인연금법은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시 부대 결의한 내용(07. 6. 29)이며, 당시 국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키로 대 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사항이었으며,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최근 장애인계에서도 104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이 함께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청원해 온 바 있음. 이 청원안은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당시 여·야가 내건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연금 수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동 법안은 이러한 장애인계의 요구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바, 여·야가 동 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1)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

(2)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7조).

(3)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5)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6)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7)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8)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Ⅲ. 대안입법 3(정화원의원 발의안)

1. 입법목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음.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크게 성장하였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즉,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

의 소득수준이 열악하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66.3%의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미가입되어 있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40~60%에 달하고 있는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1조).

(2)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함(안 제3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출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4)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제5조).

(5)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함(안 제7조 및 제8조).

(6)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본급여 및 생활급여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가초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IV. 대안입법 4(윤석용의원 발의안)

1. 입법목적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민주복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퍼센트임에 비하여 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국민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337만원)의 50.7퍼센트 수준이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0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29만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의 빈곤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비율 58.4퍼센트임에 비하여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취업 비율은 15퍼센트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비용으로 20만8천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약 11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부문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도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중증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선정기준이 됨(안 제3조).

(3) 연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따른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4)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6) 중증장애인연금은 금전으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7)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8)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9)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20조).

(10)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연금의 100분의 40을 계상함(안 제25조).

V. 대안입법 5(정부발의안)

1. 입법목적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도입목적이 있다. 현재 1~2급 장애인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서도 낮다. 특히 15세 이상 1~2급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은 13.5%, 고용률은 15.1%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지나지 않는다.⁹²⁾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하고자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⁹³⁾ 그리하여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92) 2008년 실태조사결과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1~2급 장애인 39만5천원 對 65세 이상 노인 58만4천원이며, OECD 회원국 내 상대 빈곤율(가처분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을 보면, 한국 40% 對 EU평균 18%이다.

93)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2. 주요 내용

(1)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2)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또한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⁹⁴⁾

(4)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5개년계획*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복지부내에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마련 등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현행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중 중증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계속 지급한다.

VI.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입법안별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범위 및 대상, 장애연금의 종류와 급여액을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급권자의 범위 및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급별로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장애인 일부가 해당한다. 소득인정액⁹⁵⁾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권자로 분류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매년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의 경우 박은수 의원의 입법 대안과 유사하지만, 수급권자의 기준을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95)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기초 소득범위는 대통령령을 기준으로하고,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결정할 것이다.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대상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재산의 범위와 기준, 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외에 2006년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로 규정하였으며, 2007년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의 150/100에 해당할 경우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급여액을 기준으로 입법안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의 경우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에 규정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고 있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과 윤석용 의원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25/100 이상의 금액과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은수 의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수급권자를 명시하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라 50/100의 한도 이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5/100 이상으로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 가지 입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선정기준액에 기초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10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과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3년마다 급여액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장향숙 의원의 입법안은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의 급여, 소득보전급여 등으로 급여를 세

부적으로 하였으며, 정화원의원의 입법안은 기본급여를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으로 보고, 생활급여를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세 가지 입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의 목적에 따라 법안이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및 사회영향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급권자의 범위 문제와 장애연금종류 및 급여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과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 3 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앞에서 장애인 복지환경의 실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장애수당의 개편 또는 장애연금의 도입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기존의 장애수당 중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2007년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과 2006년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대안 마련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2009년에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과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입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I. 연금제도 수급권자 분석

입법안별로 정책의 성격과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하 정부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급별로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장애인 일부가 해당한다. 소득인정액⁹⁶⁾을

96)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기초 소득범위는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고,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결정할 것이다.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대상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재산의 범위와 기준, 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결정할 것이다.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이하 박은수 의원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매년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하 윤석용 의원안)의 경우 박은수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수급권자의 기준을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짓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폐기된 입법발의안중 관련된 내용중 비교적 최근의 입법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2006년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로 규정하였으며, 2007년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의 150/100에 해당할 경우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비교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부(안)과 윤석용 의원(안), 박은수 의원(안)의 입법안과 폐기되었지만 장향숙 의원(안)과 정화원 의원(안)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넓게는 장애인의 사회적 유입과 능동적 복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부(안)과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급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추계의 차이는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정부재정 비용의 추계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초연금 금액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정부(안)의 월간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액의 5%인 91,000이다. 그에 반해 윤석용

의원(안)은 최저임금액의 30%인 279,000원 이며, 박은수 의원(안)은 최저임금액의 25%인 232,000원(경증 116,000원)이다. 물론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에 부가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150,000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II. 연금지급액 분석

연금지급을 기준으로 입법안을 살펴보면 정부(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별하여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법」제51조에 규정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고 있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안)의 입법추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150,000원을 책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5/100 이상의 금액과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은수 의원(안)의 경우 수급권자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50/100의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5/10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되,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5/100의 금액에 50/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

세 가지 입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선정기준액에 기초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10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장항숙 의원(안)과 정화원 의원(안)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3년마다 급여액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었다. 특히 장항숙 의원(안)은 이 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의 급여, 소득보전급여 등으로 급여를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정화원의원(안)은 기본급여를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이전으로 보고, 생활급여를 소득보장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Ⅲ. 소 결

종합적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결국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증진, 사회안전망의 역할 등이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유입을 통한 사회안정, 사회통합을 위한 거시적 사회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 조건 등에 따라 유형별 수급권자 집단이 형성될 것이며, 각각의 유형별 집단에 대한 장애인연금제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인연금제도 주요 입법안별 비교>

		보건복지가족부안	박은수 의원안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수급권 자범위	장애인 구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일부	18세 이상 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소득 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대통령령 결정)	하위 70/100 이하	하위 70/100 이하

		보건복지가족부안	박은수 의원안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
급여액	기본 급여	기본급여액은 『국 민연금법』에서 규 정한 금액의 5/100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월 환산 액의 25/100 이상 의 금액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월 환산 액의 30/100에 해 당 금액
	부가 급여	가구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고려 (대통령령 결정)		

제 2 절 경제성 분석

I. 장애인연금제도의 비용추계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 소요가 예상되는 정부재정 비용의 추계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비용으로서 해당 정부행위로 인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대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비용은 실현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잠재적 편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용의 평과와 측정은 편익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의 비용분석을 위해 기준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설정하였다. 즉,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는 연금 총액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설정하고, 이를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비용으로 선정하였다. 각 입법안 별로 비용을 추정하고, 수급권자의 조건과 범위, 연금액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입법안 별로 추정되는 정부재정의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순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권자에 대한 파악이다.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여 공통기준과 차별기준을 분석해야 하며, 수급권자 집단에서 제외되는 집단의 규정을 살펴야 하는데, 이는 유형별 수급권자 집단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의 종류와 지급액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액의 종류와 지급액을 살펴야 한다. 정부(안)은 기본연금액과 부가급여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연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액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과 절대적·상대적 관점에서의 지급연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기타조건들을 살펴야 한다. 기초수급보장제도와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며, 이외에도 해당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

II. 비용추계를 위한 조건 검토

1. 수급권자 인정기준의 검토

수급권자 집단의 유형별 분류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조건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급권자를 인정하는 기준을 장애인 등급에 따라 대상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정부(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을 1급, 2급, 3급 일부 장애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윤석용 의원은 1급, 2급, 3급 장애인 전체를 중증장애인 집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안)의 경우 3급 일부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전체 장애인을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있다. 즉, 수급권자의 인정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분류와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을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입법안 별 수급권자 인정기준의 비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정부 (안)	1급 + 2급 + 3급 일부	대상 없음
윤석용 의원(안)	1급 + 2급 + 3급	대상 없음
박은수 의원(안)	1급 + 2급 + 3급 일부	3급 일부 + 4급 + 5급 + 6급

둘째, 수급권자 인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안)은 소득인정액에 대한 선정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안 별로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안)과 차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할 경우 차액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윤석용 의원(안)은 40%, 박은수 의원(안)은 30%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안 별 수급권자 인정기준의 비교>

	소득인정액 기준	제외 기준	
		기초노령연금 기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기준
정부 (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보장시설 급여자 제외
윤석용 의원(안)	소득인정액 하위 70/100	기초노령연금과 장애 연금의 차액발생시 보전	소득평가액 40% 계상
박은수 의원(안)			소득평가액 30% 계상

2. 소득구간별/세대형태별 분류

소득구간별로 장애인 인구의 분포를 파악하여 소득구간별 집단의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윤석용 의원(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소득평가액에 40%를 계상하며, 박은수 의원(안)의 경우 소득평가액에 30%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구간별 인구분포의 기준은 정부(안) 비용추계의 기준이 기초수급자 27.68%, 시설장애인 5.73%, 차상위계층자 5.4%를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수급권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부부의 인구를 추계해야 한다. 장애인 부부 인구의 추계는 전체 수급대상자 장애인의 3.8%를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3. 지급연금의 종류 및 금액 분석

연금의 종류와 지급액을 검토하는 것은 지급연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여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필요하다. 첫째, 지급급여의 종류

별로 살펴보면 정부(안)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리하여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분리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기초급여를 통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填)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부여하여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과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의 경우 급여의 성격을 기초급여로 규정하여 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의 무기여급여의 성격을 보장함으로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아래의 표와 같이 연령별로 지급연금액의 종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18세 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액과의 관계를 형평성 관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18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되,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추가비용에 기초한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기초급여를 지급하되,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안 별 연령별 지급연금의 비교>

	18-64세	65세 이상
정부 (안)	기초급여 + 부가급여	부가급여
윤석용 의원(안)	기초급여	기초장애연금액 - 초노령연금액
박은수 의원(안)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액에 있어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지급액에 기준하여 5%를 설정하고 있으며, 윤석용 의원(안)은 최저임금액에 연동하여 30%를, 박은수 의원(안)은 최저임금액 기준의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기초급여의 기준을 설정하여 유사성격을 가진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급연금액의 기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입법안 별 연금지급액 기준의 비교>

	연금 지급액
정부 (안)	(국민연금액 × 5/100) + 소득·장애 유형별 부가급여액
윤석용 의원(안)	(최저임금액 × 30/100)
박은수 의원(안)	(최저임금액 × 25/100) + (최저임금액 × 25/100 × 50/100)

Ⅲ. 비용추계의 실제

1. 수급권자의 인구추계

장애인연금제도도입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 추계를 실시하였다. 수급권자의 유형별 집단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18세 이상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2개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고, 장애인 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일부)’집단과 ‘(기타)3급 장애인’, ‘경증장애인(4급+5급+6급)’등 3개 집단으로 장애인인구를 추계하였다.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추계인구>

(단위: 천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증 장애인수 ¹⁾	18-64세	385	392	398	404	409
	65세	196	203	210	219	227
	소계	581	595	609	623	637
(기타) 3급 장애인수 ²⁾	18-64세	231	236	240	244	248
	65세	121	125	130	135	140
	소계	351	361	370	379	388
경증 장애인수 ³⁾	18-64세	854	869	883	895	908
	65세	520	539	560	582	604
	소계	1,374	1,408	1,442	1,477	1,512

- 1) 중증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급과 2급 등록장애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등록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2) ‘기타 3급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기준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장애인을 의미
- 3) 경증장애인은 전국장애인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그외 3급 포함)을 제외한 장애인에 대하여 각 년도 장애인인구 증가율을 계산하여 추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비용추계서, 보건복지가족부 전국장애인 현황자료(2009년 6월 기준)

추정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아래의 <수식>에 적용하여 입법안별로 수급권자 집단의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정부(안)은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경제생활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집단의 인구수에 56.0%를 계상하였으며, 윤석용 의원(안)은 ‘중증장애인’인구수와 ‘기타 3급 장

애인'인구수의 합에 70.0%를 곱하였다.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인구수에 70.0%를, 경증장애인은 '기타 3급 장애인'인구수와 '경증장애인'인구수의 합에 70.0%를 계상하였다.

<수식> 수급권자 추정을 위한 식

정부(안)	=	'중증장애인' 인구 수 × 0.56
윤석용 의원(안)	=	('중증장애인' 인구수 + '기타 3급 장애인' 인구수) × 0.70
박은수 의원(안)	=	중증 : ('중증장애인' 인구수) × 0.7 경증 : ('기타 3급 장애인' 인구수 + '경증장애인' 인구수) × 0.70

위의 수식을 적용하여 입법안별 장애인연금제도의 수급권 대상 장애인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수급권집단의 인구분포에서 나타나듯 정부(안)은 윤석용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 집단의 50%가량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집단과 경증장애인 집단을 분리하여 추계하는 박은수 의원(안)의 수급권자 범위보다도 약 20% 가량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안별 수급권 장애인 인구 추계>

(단위: 천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안)	18-64세	216	220	223	226	229
	65세	110	113	118	123	127
	소계	325	333	341	349	357
윤석용 의원(안)	18-64세	431	439	447	453	460
	65세	221	229	238	248	257
	소계	653	669	685	701	717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박은수 의원(안) (중증장애인)	18-64세	270	275	279	283	287
	65세	137	142	147	153	159
	소계	407	416	426	436	446
박은수 의원(안) (경증장애인)	18-64세	759	773	786	797	809
	65세	448	465	483	502	521
	소계	1,208	1,238	1,268	1,299	1,330

다음으로 세대형태별, 소득구간별로 집단을 분류하여야 한다. 수급권자의 세대형태가 부부일 경우 각 수급권자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입법안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구간별로 연금지급에 차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비용의 추계를 위한 공통적 전제조건으로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비율은 3.8%를 반영하며, 소득구간별 집단은 기초수급권자 27.68%, 차상위 계층 5.0%, 시설 5.73%를 전제로 하여 반영하였다. 소득구간별 집단의 분류와 부부감액의 대상에 대한 전제조건은 정부(안)의 전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2. 연금지급액의 추계

다음으로 연금지급액을 추정하였다.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정부(안)은 국민연금액의 5%, 윤석용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최저임금액의 30%, 25%를 각각 규정하였다. 연도별 급여예상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예상액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월/연 단위의 급여예상액을 계산하였다.

정부(안)의 연금지급액을 추정하기 위한 국민연금액의 기준은 정부(안)의 비용추계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국민연금액과 최저임금액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추정한 결과 추정기준액은 다음 표와 같았다.

<정부재정비용 추계를 위한 추정기준액>

(단위: 천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추정 기준액	국민연금	1,820	1,840	1,880	1,900	1,920
	최저임금	929	999	1,075	1,157	1,245

<수식> 연금지급 추정액 계산식

정부(안)	=	국민연금액 × 0.05
윤석용 의원(안)	=	최저임금액 × 0.30
박은수 의원(안)	=	중증 : 최저임금액 × 0.25
		경증 : 최저임금액 × 0.25 × 0.5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제도의 기초연금지급액을 계산한 결과 표와 같이 월급여와 연금여로 계산할 수 있었다. 2010년의 경우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금여에 대하여 6개월치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입법안 별 연금지급 추정액>

(단위: 천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안)	월급여	91	92	94	95	96
	연금여	546	1,104	1,128	1,140	1,152
윤석용 의원(안)	월급여	279	300	323	347	374
	연금여	1,672	3,598	3,871	4,166	4,482
박은수 의원(안) (중증장애인)	월급여	232	250	269	289	311
	연금여	1,393	2,998	3,226	3,471	3,735

제 3 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박은수 의원(안) (경증장애인)	월급여	116	125	134	145	156
	연급여	697	1,499	1,613	1,736	1,868

<정부(안) 부가급여 지급 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기초생활	시 설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	일반수급자	60	70	50
	기초노령수급자	150	70	120

3. 총 비용추계

입법안별로 총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각 입법안별로 해당하는 비용 추계의 식을 정하고 계산을 통해 연도별 총 비용을 추계하였다. 본래 총 비용을 추계할 때 정책시행을 위한 정책운영비, 예를 들어 조직운영,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가 계상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수식> 정부(안) 비용추계의 식

정부(안) 해당 정부재정 총 비용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18-64\text{세})\text{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 인구} \times (0.561) - 0.0573]2\}$ $\times \text{연도별 해당연금지급액} \times [1 - (0.038 \times 0.2)]\}$
부가급여 = $\{(18-64\text{세})\text{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times [(기초수급권자 \times 60)$ $+ (\text{시설} \times 70) + (\text{차상위} \times 50)]\} +$ $\{(65\text{세 이상})\text{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times [(기초수급권자 \times 1$ $50) + (\text{시설} \times 70) + (\text{차상위} \times 120)]\}$
1) 1촌 직계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 인정자 제외 2) 시설장애인 5.73% 제외

<정부(안) 연도별 총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증 장애인	기초급여	부부	3,215	6,618	6,866	7,037	7,209
		단독	101,741	209,413	217,282	222,670	228,117
	부가급여	18-64세	53,911	109,759	111,461	113,022	114,581
		65세 미만	61,027	126,491	131,365	136,616	141,818
	소계		219,894	452,281	466,974	479,345	491,725

정부(안)을 수행하기 위한 총 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초 급여 1조 101억원과 부가급여 1조 1,000억원 등 총 2조 1,10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었다. 2010년에는 기초급여 6개월분 1,017억과 부가급여 610억원 등 총 1,62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식> 윤석용 의원(안) 비용추계의 식

윤석용 의원(안) 해당 정부재정 총 비용 =
= {(18-64세)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 {(65세 이상)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윤석용 의원(안) 연도별 총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증 장애인	18-64세	부부	21,916	48,068	52,577	57,420	62,699
		단독	693,532	1,521,084	1,663,774	1,817,049	1,984,086
	65세 이상	부부	11,252	25,089	28,032	31,365	35,031
		단독	356,080	793,940	887,062	992,539	1,108,548
	소계		1,082,780	2,388,181	2,631,445	2,898,373	3,190,364

윤석용 의원(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요가 예측되는 정부재정의 총 비용은 약 12조 1911억 가량이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

에는 6개월분 약 1조 827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조 3,881억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식> 박은수 의원(안) 비용추계의 식

박은수 의원(안) 해당 정부재정 총 비용 = 중증장애인 총비용 + 경증장애인 총비용
중증장애인 = {(18-64세)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 {(65세 이상)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경증장애인 = {(18-64세)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 0.5; + {(65세 이상)연도별 해당수급권자 추계인구 × [1 - (0.038 × 0.2)]} × 연도별 해당연금지금액 × 0.5;

<윤석용 의원(안) 연도별 정부재정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증 장애인	18-64세	부부	11,424	25,027	27,346	29,837	32,547
		단독	361,521	791,966	865,367	944,179	1,029,949
	65세 이상	부부	5,798	12,931	14,450	16,170	18,061
		단독	183,481	409,204	457,271	511,688	571,542
	소계	562,224	1,239,128	1,364,434	1,501,874	1,652,099	
경증 장애인	18-64세	부부	16,080	35,250	38,539	42,072	45,920
		단독	508,855	1,115,472	1,219,570	1,331,369	1,453,135
	65세 이상	부부	9,497	21,178	23,664	26,479	29,575
		단독	300,529	670,165	748,828	837,905	935,880
	소계	834,961	1,842,065	2,030,601	2,237,825	2,464,510	

박은수 의원(안)을 시행하기 위해 예측되는 정부재정의 총 비용은 약 15조 7,297억 가량이다. 중증장애인 대상의 연금총액이 약 6조 3,197억이며, 경증장애인 대상의 연금총액이 약 9조 4,100억이다.

<총 비용추계 결과 종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인 등록 인구추계 (연령)	중증장애인수(기준)	A1	18-64세	385,318	392,238	398,319	403,899	409,470	385	392	398	404	409
			65세 이상	195,558	202,667	210,477	218,889	227,224	196	203	210	219	227
			소계	580,876	594,905	608,796	622,788	636,694	581	595	609	623	637
	기타 3급 장애인수(기준)	A2	18-64세	230,668	235,553	239,862	243,846	247,863	231	236	240	244	248
			65세 이상	120,707	125,013	129,777	134,933	140,041	121	125	130	135	140
			소계	351,375	360,566	369,639	378,779	387,904	351	361	370	379	388
	경증장애인 수(기준)	A3	18-64세	854,032	869,370	882,848	895,216	907,563	854	869	883	895	908
	1,470,018		65세 이상	519,914	538,814	559,578	581,942	604,102	520	539	560	582	604
	836,179		소계	1,373,946	1,408,184	1,442,426	1,477,158	1,511,665	1,374	1,408	1,442	1,477	1,512
입법안별 인구추계 (연령)	정부(안)	B1	18-64세	215,778	219,653	223,059	226,183	229,303	216	220	223	226	229
	A1 * 0.56		65세 이상	109,512	113,494	117,867	122,578	127,245	110	113	118	123	127
			소계	325,291	333,147	340,926	348,761	356,549	325	333	341	349	357

제 3 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윤석용(안)	B2	18-64세	431,190	439,454	446,727	453,422	460,133	431	439	447	453	460
	(A1+A2)*0.7		65세 이상	221,386	229,376	238,178	247,675	257,086	221	229	238	248	257
			소계	652,576	668,830	684,905	701,097	717,219	653	669	685	701	717
	박은수(안)	B3	18-64세	269,723	274,567	278,823	282,729	286,629	270	275	279	283	287
	A1 * 0.7		65세 이상	136,891	141,867	147,334	153,222	159,057	137	142	147	153	159
	중증장애인		소계	406,613	416,434	426,157	435,952	445,686	407	416	426	436	446
	박은수(안)	B4	18-64세	759,290	773,446	785,897	797,343	808,798	759	773	786	797	809
	(A2+A3) * 0.7		65세 이상	448,435	464,679	482,548	501,813	520,900	448	465	483	502	521
	경증장애인		소계	1,207,725	1,238,125	1,268,445	1,299,156	1,329,698	1,208	1,238	1,268	1,299	1,330
세대 형태별	정부(안)	18-64세	부부	8,200	8,347	8,476	8,595	8,714	8	8	8	9	9
		C11	단독	207,579	211,306	214,582	217,588	220,590	208	211	215	218	221
		65세 이상	부부	4,161	4,313	4,479	4,658	4,835	4	4	4	5	5
		C12	단독	105,351	109,181	113,388	117,920	122,410	105	109	113	118	122
		소계		325,291	333,147	340,926	348,761	356,549	325	333	341	349	357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윤석용(안)		18-64세	부부	16,385	16,699	16,976	17,230	17,485	16	17	17	17	17
			C11	단독	414,805	422,754	429,751	436,191	442,648	415	423	430	436	443
			65세 이상	부부	8,413	8,716	9,051	9,412	9,769	8	9	9	9	10
			C12	단독	212,973	220,660	229,127	238,264	247,316	213	221	229	238	247
			소계		652,576	668,830	684,905	701,097	717,219	653	669	685	701	717
	박은수(안) 중증장애인		18-64세	부부	10,249	10,434	10,595	10,744	10,892	10	10	11	11	11
			C11	단독	259,473	264,133	268,228	271,986	275,737	259	264	268	272	276
			65세 이상	부부	5,202	5,391	5,599	5,822	6,044	5	5	6	6	6
			C12	단독	131,689	136,476	141,735	147,400	153,013	132	136	142	147	153
			소계		406,613	416,434	426,157	435,952	445,686	407	416	426	436	446
	박은수(안) 경증장애인		18-64세	부부	28,853	29,391	29,864	30,299	30,734	29	29	30	30	31

제 3 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11	단독	730,437	744,055	756,033	767,044	778,064	730	744	756	767	778
			65세 이상	부부	17,041	17,658	18,337	19,069	19,794	17	18	18	19	20
			C12	단독	431,394	447,021	464,212	482,744	501,106	431	447	464	483	501
			소계		1,207,725	1,238,125	1,268,445	1,299,156	1,329,698	1,208	1,238	1,268	1,299	1,330
총액	윤석용(안)		18-64세	부부	21,916	48,068	52,577	57,420	62,699					
			C11	단독	693,532	1,521,084	1,663,774	1,817,049	1,984,086					
			65세 이상	부부	11,252	25,089	28,032	31,365	35,031					
			C12	단독	356,080	793,940	887,061	992,539	1,108,548					
			소계		1,082,780	2,388,181	2,631,444	2,898,373	3,190,363					
	박은수(안) 중증장애인		18-64세	부부	11,424	25,027	27,346	29,837	32,547					
			C11	단독	361,521	791,966	865,367	944,179	1,029,949					
			65세 이상	부부	5,798	12,931	14,450	16,170	18,061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12	단독	183,481	409,204	457,271	511,688	571,542					
		소계		562,224	1,239,128	1,364,435	1,501,873	1,652,099	6,319,759				
	박은수(안) 경증장애인	18- 64세	부부	16,080	35,250	38,539	42,072	45,920					
		C11	단독	508,855	1,115,472	1,219,570	1,331,369	1,453,135					
		65세 이상	부부	9,497	21,178	23,664	26,479	29,575					
		C12	단독	300,529	670,165	748,828	837,905	935,880					
		소계		834,961	1,842,065	2,030,601	2,237,826	2,464,510	9,409,962				
									15,729,722				
	기초급여	기초 급여	부부	3,215	6,618	6,866	7,037	7,209					
			단독	101,741	209,413	217,282	222,670	228,117	1,010,167				
		부가 급여	18- 64세	53,911	109,759	111,461	113,022	114,581					
			65세 이상	61,027	126,491	131,365	136,616	141,818	1,100,052				
				219,894	452,280	466,975	479,344	491,725	2,110,219				

제 3 절 사회적 영향분석

장애인연금제도의 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기초하여 장애인연금제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빈곤감소, 삶의 질, 사회통합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I. 빈곤감소효과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빈곤의 완화이다. 빈곤감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빈곤율(Poverty ratio),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소득충족률(Income-Need ratio) 지표 등 빈곤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빈곤감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유형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와 실태조사, 패널조사 자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어렵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차원에서 입법안 별로 단순한 추론 이상을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 있어 빈곤감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다.

우선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양적측면에서 빈곤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빈곤율은 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의 개념으로 도출된 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또는 인구의 규모가 전체 가구 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PR은 가구규모별 빈곤선이 π 일 경우의 빈곤율을, q는 개별가구의 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 즉, 최저생계비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규모를, n은 전체 분석 대상가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PR(\text{빈곤율}) = \frac{q}{n}$$

다음으로, 빈곤의 질적측면에서 빈곤의 심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빈곤갭비율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아래에 있는 가구의 소득과 최저 생계비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의 총합을 전체가구 최저생계비의 총합(소득이 0일 경우 전체 가구의 빈곤갭 총합)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여기서 분자의 빈곤갭의 총합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 한다. q 는 빈곤가구, n 은 전체가구, π 는 가구규모별 빈곤선, y 는 가구소득을 각각 의미한다.

$$PGR(\text{빈곤갭비율}) = \frac{\sum_{i=1}^q (\pi - y_i)}{n \pi}$$

소득충족률(Income-Need ratio)은 빈곤갭비율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심도변화를 나타낸다. 이것은 개별가구의 소득수준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최소한의 욕구, 즉 최저생계비를 통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y 는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π 는 가구규모별 빈곤선이다.

$$INRatio(\text{소득충족률}) = \frac{y}{\pi}$$

빈곤갭 비율이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향후 채워야 할 부족분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면, 소득충족률은 특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정책대상집단의 소득수준향상을 통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가구의 있어서 빈곤갭 비율은 빈곤선을 상

회하여 빈곤가구가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지만, 소득충족률은 빈곤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가 고유의 값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율의 개념과 더불어 빈곤갭 비율과 소득충족률을 병행하여, 각각의 빈곤지표가 가지는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충족률의 개념을 통해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향상이 목표달성의 수준으로 차별화 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 삶의 질 향상효과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빈곤의 완화효과 이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삶의 질의 향상이다.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와 사회의 질 개념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삶의 질의 향상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득실태와 지출실태, 사회참여 활동, 삶의 만족도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차원에서 향상효과를 분석하되 추가비용의 계측과 지출실태를 비교분석하는 것과 같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정성적 평가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우선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애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현황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연금, 친인척 보조금(사적이전), 사회보호단체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이전부분과 사적이전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장애연금 수급 이후의 소득현황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실태에 있어 항목별 지출실태와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Ⅲ. 사회안정 및 통합효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생계를 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장애인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재정비용의 추계 예산을 비교한 결과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 예산 6조 3,197억원, 경증장애인 예산 9조 4,100억원 등 총 15조 7,2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석용 의원(안)이 12조 1,911억원, 정부(안)이 기초급여 1조 101억원, 부가급여 1조 1,000억원 등 총 2조 1,101억원으로 나타나 재정비용 추계금액의 큰 차이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대상의 재정예산만 비교해 보았을 때 윤석용 의원(안)이 약 5.77배, 박은수 의원(안)이 약 3.00배의 규모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안)의 수급권자의 인정범위가 가장 좁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1촌 직계 및 배우자의 경제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 이상일 경우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0년 등록장애인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194천명이 장애연금지급대상 인구로 추정된다. 이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80천명을 기준으로 약 33.3%, 3급이상 장애인 931천명을 기준으로 약 20.8%에 해당하는 장애인만이 기초장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어 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둘째,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연금지급액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동일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기초급여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91천원이다. 그에 반해 윤석용 의원(안)은 279천원 약 3.07배에 해당하며, 박은수 의원(안)은 중증장애인 232천원으로 2.5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증장애인 116천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27배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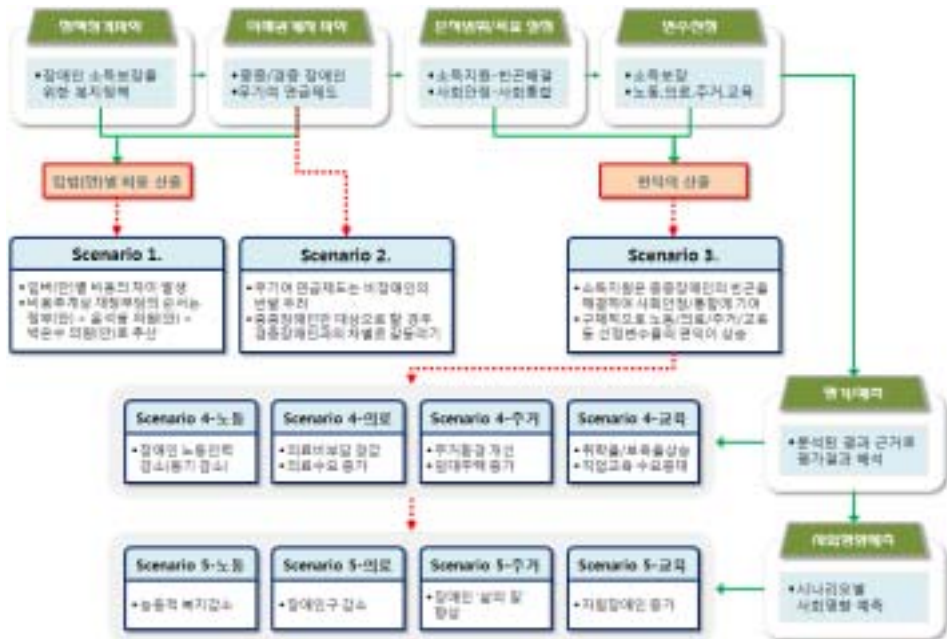
물론 정부(안)은 부가급여를 통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금액을 보전하고자 하고 있으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재정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장애수당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장애수당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정책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염려가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 91천원에 부가급여 60천원을 합산할 경우 151천원으로 장애수당금액⁹⁷⁾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IV. 소 결

종합적으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단계별,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분석할 수 있다.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완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영향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발생이 예측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문제와 무기여 연금지급으로 인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갈등,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차별적 연금지급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로드맵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략하게 입법안의 내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97) 기초수급자 130천원, 차상위 120천원이고, 경증장애인은 기초수급자 30천원, 차상위 20천원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사회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제 4 장 종합 결론 및 권고

제 1 절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고려

I. 단계적 제도발전방안 모색

현행 장애인소득보장 관련 입법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경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월 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일면을 살펴보면, 현행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지원액수가 필요에 비해서 낮다는 문제와 함께 수당의 지급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범위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고, 지원단가도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산출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장애인의 소득지원정책의 수립이라는 차

원에서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단가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 모든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운영 초기 국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안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와 함께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명된 중증 장애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이후 제도 정착단계에 이르러서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자산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되, 최초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시작하여 이후 차차상위계층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금급여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 금액(9만원~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도정착단계에서는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및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II.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 조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 등과의 제도적 관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수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수당제도를 승계하는 새로운 제도로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장애수당은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의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장

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기회의 상실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설계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으로 보면 공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양 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더 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만일 양 제도를 공존시키는 경우 장애수당제도는 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하고, 장애인연금은 이를 제외한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의 관계에서 보면 장애인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장애인의 최저 소득 보장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빈곤한 경우에 한하여 빈곤한 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간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의 관계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제도과는 그 입법목적은 달리하고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연금법상의 연금제도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은 전자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1차적 사회안전망이라면, 후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충적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제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수급장애인의 판정기준 개선

연금수급을 결정하기 위한 장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장애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애수당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등과의 세밀한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전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이 도입될 장애인연금법 또한 이러한 기반위에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모델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보다 훨씬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차등지급의 구분은 경증과 중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한해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제도와 비교해 보면, 제도의 대상 인구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장애기준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개편 과제를 통해서 연구된 장애판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된 입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사회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범주를 참고할 만하다. 현행 독일 사회법전에서는 장애 및 중증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능력 및 심리적상태가 해당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를 6개월 이상 일탈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GB IX 제2조 제1항).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참여적 모델에 기초한 개념이다. 복합장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능 상실의정도가 산정된다. 또한 중증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50%이상이고 사회법전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상시 체류하거나 혹은 법률(SGB IX 제9권 제73조)상의 고용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유사중증

장애인 역시 보호의 대상이다. 유사중증장애란 “장애정도가 50%에 이르지 않았지만 30%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고용보장을 위한 조치가 없으면 법률상의 고용의 기회를 취득 혹은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SGB IX 제2조제2항 및 제3항).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장애 및 중증장애의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때 장애의 원인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IV. 급여 지급방식의 유동화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소득인정액의 70/100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일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 속한 사람과 이 기준을 근사하게 초과한 가구에 속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실세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고 장애기준 만으로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영향평가기법의 활용에 따른 시사점

정책결정에 있어서 특정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부개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정책설계단계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영향평가의 적용을 위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원칙 및 분석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선정하였다. 그와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영향평가 모형을 사전준비(변수선정 포함) → 분석 → 평가/예측 → 사후 감시 및 평가 → 환류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단계에서 분석과 평가의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사회영향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이를 적용하면서 개괄적인 차원에서 빈곤감소 효과와 삶의 질 향상 효과, 사회통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모형의 구축과 적용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범위의 설정과 분석방법론의 활용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한 예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후 감시와 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이 정책의 동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외의 연구에 비해 사회영향평가의 연구가 환경영향평가의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형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모형의 제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평가의 한계

I. 대안입법상의 한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금전급부 중심의 소득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대안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의 운영방

식대로 조세를 통한 지원은 무제한적으로 무기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운영사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보호의 중국적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호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활동지원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안입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의 근로생활관계와 연계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사회법전 제1권에 선언되어 있는 독일에서의 장애인보호의 기본원칙은 장애인보호와 근로와의 연계성을 선언한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독일 사회법전에서 제1권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보호의 5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장애를 예방·제거·감소시키고, 악화를 방지한다. 장애가 이미 발생한 경우,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를 받는다. 둘째, 소득능력감소와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예방·제거 혹은 최소화하며 악화를 예방·방지하고, 장애인이 조기에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장애인의 인격실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독자적인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독일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현황을 비교해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입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는 고용관련 지원이 중요하다. 본 영역은 크게 장애인의무고용제

도를 통한 일반고용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요하다. 먼저 의무고용제도를 보면 2004년에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민간부문에서는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폐지하고 정부부문에서는 고용의무 직종을 대폭 확대하여 약 2만 9천여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장애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인 고용율 자체는 정체상태에 있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부진이 부진한 상태이며,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에게 조농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경제활동 지원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화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무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 강화이다. 여기에서는 정부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고용률 3%이상에서는 현행 2%에서 3%로, 고용률 3%미만은 현행 5%에서 6%로 조정하여 시

행하는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유인 및 제재방안 마련,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특례입학 확대를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확대방안의 수립 등도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이다. 구인·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장애인 지원고용과 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II. 평가방법론상의 한계

사회영향평가의 입법평가의 활용은 기존 입법평가가 규범적, 법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과급효과에 대한 접근은 입법행위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당위적인 필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국외의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영향평가의 모형화(modeling)을 구성할 때에 우리나라 행정환경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및 모형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법평가에 있어 사회영향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병행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이지만, 비용과 편익을 설정함에 있어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제도와 같이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편익의 발생을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이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입법평가의 사회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적 차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 대한 실제 분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담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사회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변수 선정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사회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기존의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평가 등 다른 분야의 평가방법과의 차별성 확보 또는 통합적 영향평가의 도입 등도 고려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건,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SIA)방법 연구(I):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5호, 2003
- 권선진·정경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연금 수급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권, 2005.
- 권오형, ‘일본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문길,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 _____,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측면에서의 소득과 고용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분석자료, 2009
- 김용하, “파라다임적 연금개혁 방안”, 한국사회장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4
- 김종인·원석조,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보건과 복지』. 제3집, 2000
- 김태윤·김상봉,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박영사, 2004
- 김태진·김문수, 우리나라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 『복지행정 논총』, 2004
- 노대명,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결과 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1999.
- 노용환,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2009

-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백은령, 중증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권, 2004
- 변용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국내 장애인 정책포럼 자료집, 2008
- 변용찬 외,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9
- _____, 장애인 연금제도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서동명, 장애인복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9권, 2008
- _____, 『2009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2009 정책간담회, 박은수 국회의원실, 2008
- 서인환, “기초장애연금법 제정방향과 향후 전망”,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2008
- 양희택,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특징”,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2008.
- 엔아이코리아, 『장애연금 수급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
- 오세란,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권, 2008
- 우선희,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측면에서의 의료·주거·교육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분석자료, 2008

참고문헌

- 우주형,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중
증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7
- _____, “장애인연금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박은수 국회의원실, 2008
- 유동철 외, 『장애인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 윤상용·김태완·강민희·최현수·이병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
편 연구: 기초 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8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명출판사, 2006
- 이선우 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 이선우,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2권, 2008
- 이시재,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환경사회학연구(ECO)』. 3호,
2002
- 이정환,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환경사회학연구(ECO)』. 6호,
2004
- 이태진·박은영,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
안. 『보건복지포럼』 2009. 04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 전영환·박창수, 간접적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효
과. 『사회복지정책』. 35권, 2008

-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
- 정주철·임주영,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6(1), 2007
- 조성재 외,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07
- 조준모 외,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04
- 조홍식·유동철,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과제. 아태장애인10년 평가 논문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2007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009
- 황성철·이상희, 장애인 보호고용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2009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9
- Barrow C. J. (2000). Social Impact Assessment: An Introduction. London: Arnold.
- Becker, H. A. (1997). Social Impact Assessment: Method and Experie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Developing World. Bristol, PA: UCL Press.
- Beck, Wolfgang, Van Der Maesen, Laurent J. G., Thomése, Fleur, and

참 고 문 헌

- Walker, Alan.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 Boulding, K. E. (1967). *The Boundaries of Social Policy*. *Social Work*. 12(1)
- Buchanm D. and Riversm M. J. (1990). *Social Impact Assess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New Zealand*. *Impact Assessment Bulletin*. 8(4)
- Burdge, R. J. (1994). *A Community Guide to Social Impact Assessment*. Middleton: Social Ecology Press.
- Burdge, R. J. (2002). *Why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Orphan of the Assessment Process*.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20(1)L
- Burkhauser, R. and M. Daly. (1996). *Employment and Economic Well-Being Following the Onset of a Disability*. in Jerry Marshaw et al. (ed.), *Disability. Work and Cash Benefit*. Kalamzoo: The Upjohn Institute.
- DeJong, P. (2003). *Disability and Disability Insurance*.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 EU. (2005).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 George, V. and P. Wilding. (1984). *The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KP.
- IOCGP. (1995).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NOAA Tech Memo NMFS-F/SPO-15. reprinted in *Impact Assessment*. 12(2)

- IOCGP, (2000).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21(3)
- Martin, B. (2003). Transforming Disability Welfare Policy. Completing a Paradigm Shift. in Prinz (ed.).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 Vanclay, F. (2006).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 Critical Comparis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US Docu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6: 3-14.
- Vanclay, F. and D. A. Bronstein. (1995). *Environmental Social Impact Assessment*. John Wiley and Sons.
- Wolf, C. P. (1980). Getting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Policy Are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1)

부 록

법률 제 호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발의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유형 및 정도”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등급을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급 및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요보호장애인급여를 받는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6. “경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3급 내지 6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급여실시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 3 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

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제 4 조(급여액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 내지 제10조의 급여액을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액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급여의 종류

제 5 조(급여의 종류) ①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급여
2. 정보접근급여
3. 건강급여
4. 요보호장애인급여
5. 소득보전급여

②이 법에 따른 급여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이동급여) ①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평균교통비의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정보접근급여) ①정보접근급여는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언어·청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에게 정보접근을 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접근급여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건강급여) 건강급여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요보호장애인급여) ①요보호장애인급여는 뇌병변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 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보호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득보전급여) ①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임금을 받는 자의 연금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한다.

제 3 장 급여실시기관

제11조(급여실시기관) ①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한다.

②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급여실시기관 상호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급여실시기관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 ①장애인소득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급여액의 결정
3. 그 밖에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대표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부조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④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장애인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장애인단체 대표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판정에 관한 전문의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⑤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실시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급여실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기능과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급여의 실시

제13조(급여의 신청) ①제3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대리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급여실시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급여실시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급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급여실시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급여실시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급여실시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사결과 등의 보고 등)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

부 록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급여의 결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급여의 실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제19조(급여의 변경) ①급여실시기관은 수급자의 장애상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급여의 중지 등) ①급여실시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청문) 급여실시기관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에 변동이 있거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급여실시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의신청

제25조(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급여실시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급여실시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급여실시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급여비용

제29조(급여비용) 급여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실시비용
4. 그 밖에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급여비용의 부담구분)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군·구가 수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29조제 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2. 시·군·구가 수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29조제 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급여실시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7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30 이하를 해당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은 해당 광역시 및 도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따라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부 록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급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1조(반환명령) 급여실시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 5 장 벌 칙

제32조(벌칙)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인과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금액을 말한다.
6.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연금액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
출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따른 중증
장애인지초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연

금액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연금의 재원) ① 보장기관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 2 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6 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
2. 생활급여

제 7 조(기본급여의 내용) 기본급여는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교통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생활급여의 내용) 생활급여는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생활급여의 예외) ① 생활급여 수급권자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자로 하되, 당해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생활급여 수급자의 예외로 한다.

제 3 장 보장기관

제10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 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 간의 협조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증장애인가초연금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본급여 및 생활급여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가초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

건복 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법」상 유형별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장애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인 이내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인 이내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인 이내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급여의 실시

제12조(급여의 신청) ① 제3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규정과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장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장애 중증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및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4조(연금의 결정 등) ① 보장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12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금의 실시 등) ① 연금은 제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보장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④ 급여는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등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급여의 지급절차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금의 정지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때
4.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제 5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수급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

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수급자가 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록

1.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밀의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障 碍 人 福 祉 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 4 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제 호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기여식 연금)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은 무기여식 연금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연금을 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 4 조(수급권자) ① 연금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매년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수급자의 결정) ①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가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에는 그 다음 달에 수급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 6 조(연금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 7 조(연금액의 수준) 연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연금액의 차등지급) ① 연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금액의 차이는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등 경제적 생활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연금의 지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제 9 조(연금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① 연금은 정액으로 하며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4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1조(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연금에 관한 전문가 2인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차관이 추천하는 자 2인

③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금의 재원)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압류 등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16조(비밀의 유지)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보장기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소송) 보장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

부 록

된 연금 기타 과오급된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연금을 받게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1조(시효) 제19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2조(타 급여와의 관계) 본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100분의 30을 계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급, 2급 및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연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

권자와 배우자의 재산범위와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중증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 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지급연금액) ① 중증장애인연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따른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연금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 6 조(급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기준과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장애 등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

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축물·차량·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출입국·교정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비밀의 유지) 중증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연간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자료의 이용 등 그 밖에 수급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중증장애인연금은 금전으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중증장애인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③ 중증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지급의 중증장애인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증장애인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중증장애인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유족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권의 상실 및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수급권을 상실함으로써 연금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급권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정지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익의 환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중증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중증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중증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수급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효) 제1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연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증장애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조세와 기타 공과금의 면제) 수급자가 받는 중증장애인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연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록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5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연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연금의 100분의 40을 계상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준비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행하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 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정부발의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와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8. “기본급여”라 함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 3 조(장애연금의 기본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하 “장애연금”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수급권자)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제 5 조(장애연금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
2. 부가급여

제 6 조(기본급여액) ① 기본급여액(기본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본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기본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제 7 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부가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장애연금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장애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

3. 제4조 단서에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재산 및 장애 등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 또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출입국·교정시설과 치료감호시설의 입·출소·매장·화장·장례·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장애 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자료의 이용 등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애연금은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장애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③ 장애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유족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때
3.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그가 받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연금의 환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수급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효) 제17조에 따른 장애연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0조(비용의 부담) 장애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1조(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산화를 위하여 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면제) 수급자가 받는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애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장애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 3 조(장애 등급 재심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등급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조(장애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이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이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의 수급권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를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